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2016. **12. 15.**(목) 9:30~12:20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외교센터 3층)



PROGRAM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 일 시 : 2016. 12. 15(목) 9:30 ~ 12:20

☑ 장 소 :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외교센터 3층)

시간	세부일정
9:00~9:30	등 록
9:30~9:40 (10분)	개 회 사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사회자 : 박원순 부연구위원
	주제 발표
9:40~10:55 (75분)	발표 1.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 김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2. 영유아 학대 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 3. 영유아 학대 현황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0:55~11:10 (15분)	휴 식
	종합토론
11:10~12:10 (60분)	종합토론 좌장 : 이미화 기획조정본부장 ▶ 최혜영 교수(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안정은 장학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박현선 교수(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은정 소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양진혁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류승표 국장(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상 주제별 토론 순)
12:10~12:20	폐 회

CONTENTS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발표 **01**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1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02** 영유아 학대 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31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03** 영유아 학대 현황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55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토론

최혜영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77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82
박현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86
김은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89
양진혁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사무관93
류승표 어린이집공제회 국장95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분주한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연구소가 주최하는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발표자, 토론자를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안전포럼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한 포럼입니다. 지난해 1차 포럼에서는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의 협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생활공간인 유치원·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조성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한 공간 조성에 대한 많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주제로 저희 연구소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협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대아동이 발견되는 비율은 1,000명당 1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성장한 아동들은 나중에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아동학대의 예방, 발견, 치료는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행복을 사회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아동 존중 문화로 사회가 개선되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발표자료 01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협동)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 발간 중)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2016. 12. 15.

김은영, 박원순, 이재희, 이혜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목차

1. 연구 소개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결과
6. 정책제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 연구 소개

◦ 오늘 발표할 연구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3차년도 연구의 2년차 연구로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를 주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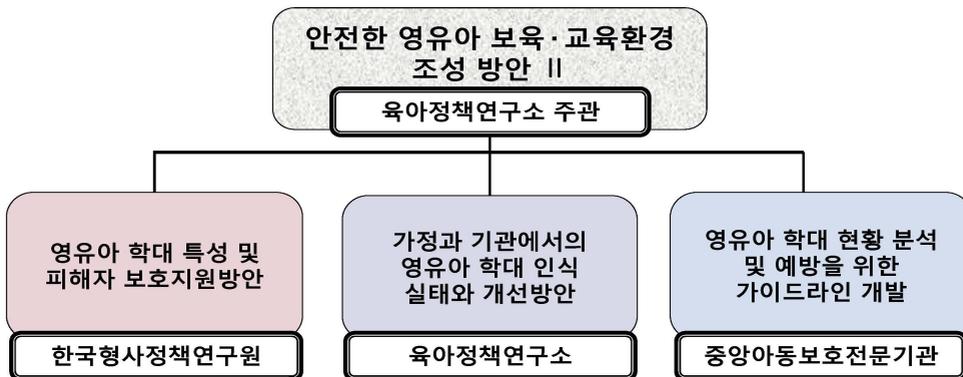
연차별	주요 연구주제 및 내용
1차년도 (2015년)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환경 조성 방안 유치원·어린이집 안전환경 / 교통안전
2차년도 (2016년)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환경 조성 방안(II)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3차년도 (2017년)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환경 조성 방안(III)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강·위생관리 / 급식

[그림 1]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환경 조성방안」 3차년도 연구 연도별 주제



1. 연구 소개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수행을 위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구팀과 연구협력체계를 구성함.



[그림 2] 영유아 안전을 위한 2차년도 협동연구 체계 및 구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됨.
 -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9,203건으로 지난 15년간 4.6배 증가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 영유아 학대는 대상의 특성 상 심각한 결과로 귀결되는 비율이 높음.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의 특성 상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가 주로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음. 2015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19건 중 피해 아동이 0~6세 영유아인 비율은 약 89%임.
-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영유아를 보육·교육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을 통해 영유아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 연구내용

- 아동학대의 정의와 영유아 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과 영향, 관련 인식을 검토함.
-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관련 제도와 범 부처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함.
-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예방을 위한 체계를 알아봄.
- 가정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학대 관련 인식을 분석함.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통계자료, 정책자료를 수집·분석함.
 - 영아기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대해서 통합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영유아 학대 관련 20개 논문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함.
- 설문조사
 -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1,139명, 교사 1,247명, 총 2,386명이 참여함.
- 국외 출장: 영국 및 독일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5. 연구결과: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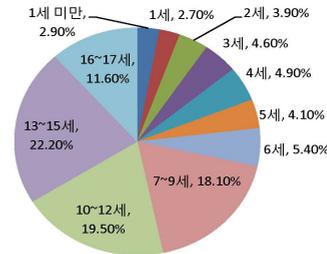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돌봄시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집, P5.

[그림 3] 아동학대 유형

5. 연구결과: 영유아 학대의 특성

-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만 6세 이하 아동은 전체 피해 사례 중 28.5%에 해당함. 이 중 1세 미만 아동의 학대도 총 344사례인 2.9%나 됨.



[그림 4] 아동학대 연령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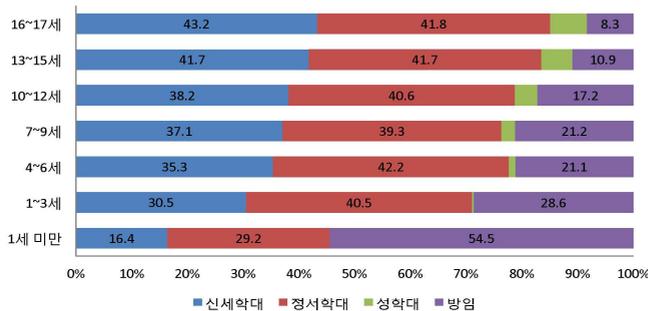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106. <표 4-2>를 재구성함.

- 영유아기에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때문에, 실제 영유아 학대 비율은 더 높을 수 있음.



5. 연구결과: 영유아 학대의 특성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방임의 비율은 적어지나,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1세 미만은 방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1~6세에는 정서학대, 신체학대의 순으로 비율이 높음.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106. <표 4-2>를 재구성함.

[그림 5] 연령별 아동학대 유형 비율



5. 연구결과: 영유아 학대 원인

- 아동학대에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 및 갈등적 구조, 부모의 양육 관련 태도, 사회적 구조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메타분석 결과 영유아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요인은 아동특성, 가족특성, 교사특성, 지역사회요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애착, 양육태도였음.

<표 1> 영유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효과 크기	Zr 값	신체학대 요인	정서학대 요인	방임 요인
Large	0.4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성격 ·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 교사의 자아존중감 · 교사의 직무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성격 · 양육태도 ·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5. 연구결과: 영유아 학대 원인

효과 크기	Zr 값	신체학대 요인	정서학대 요인	방임 요인
Medium	0.25-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가정 여부 · 교사의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 양육스트레스 · 교사에 대한 사회적지지 · 어머니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스트레스 · 교사의 자아존중감 · 결혼만족도
Small	0.10 ~ 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만족도 · 부부갈등 · 애착 · 어머니 우울 · 양육스트레스 · 어머니 근무형태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양육태도 · 교사 직무특성 · 출생순서 · 아버지 직업 · 부모의 기타스트레스 · 교사가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 ·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지지 · 어머니 음주여부 · 교사의 근로조건 · 부모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갈등 · 애착 · 교사 직무태도 · 출생순서 · 교사의 자녀유무 · 어머니 우울 · 어머니 자기효능감 · 아동연령 · 부모의 기타 스트레스 ·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 어머니 음주 · 부모건강 · 결혼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기타 스트레스 · 교사 직무특성 · 부부갈등 · 애착 · 어머니 우울 · 교사의 사회적지지 · 주거환경 · 교사의 근로조건 · 시설수준 · 교사 자녀유무 ·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아동연령 · 어머니 근무형태 · 어머니 종교 · 교사 성격(내적 통제) · 교사 학력



5. 연구결과: 아동학대의 영향

- **아동학대는 아동의 적응 문제, 행동문제 및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침.**
 - 정서, 방임과 같은 학대경험과 학업성취, 학교규범준수,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의 학교적응은 부적상관(김미정·염동문, 2012)
 -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부부폭력의 목격 순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김평화·윤혜미, 2013)
 - 방임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문제는 증가(유정아·정의중, 2014)
 -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불안감,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민대기, 2014)
- **아동학대는 아동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아동학대의 지속 효과가 강력(김수정·정의중, 2013)



5. 연구결과: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심판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등이 있음.
- 2012년 발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14년 9월부터 시행 중임.
- 특례법과 함께 **아동복지법이 2014년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도 종래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었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음.
- 정부에서는 2014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였고, 2015년에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5. 연구결과: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표 2> 아동학대 예방 종합 대책 주요 내용

대책	주요내용	세부내용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학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직군의 교육 및 아동학대 간이점검표 보급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고위험군 발굴 및 가정방문을 통한 조기발견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경찰이 반드시 개입하여 수사 실시 -가해자 부모에 대한 퇴거, 접근·통신 금지, 친권행사 제한·정지 이행 -학대 고위험군 가정의 거주지 이전 시 담당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 인수·인계, 피해아동 졸업 시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5. 연구결과: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대책	주요내용	세부내용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아동학대 고위험군의 가정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시군구의 각종 사회서비스(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지원을 통해 학대 발생 요인이 되는 가정 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의무규정인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의 아동안전교육 충실 이행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송출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한 일반 국민 인식 개선	
가해자 처벌 강화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제도 활용, 경미한 학대에도 부모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상당 수강 의무 부과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 제한	

자료: 국무조정실 국민복지서비스실(2014. 2. 28).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개입한다.

5. 연구결과: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정책



◦ 정부는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전면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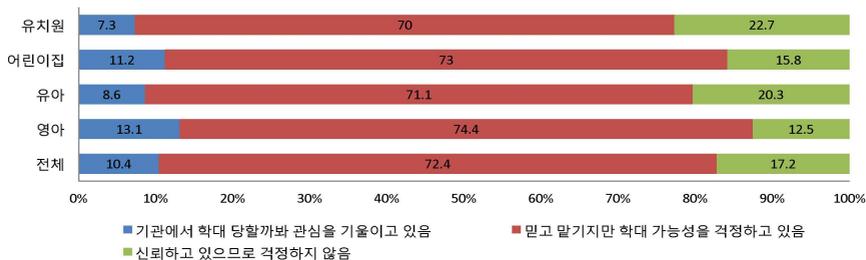
[그림 6]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추진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3. 29). 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인식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정도를 살펴보면, 믿고 맡기지만 학대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비율이 72.4%로 가장 높았으며, 신뢰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음 17.2%, 기관에서 학대 당할까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10.4%, 신원 및 교육 내실화



[그림 7]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녀에 대한 아동 학대 우려 정도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인식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는 경험 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은 월 1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대체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학대의 경우에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으나 대체로 지속적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행위에 비해 높게 나타남.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인식

<표 3>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행동 경험

구분	경험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 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 에서만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62.7	65.7	18.6	12.2	3.5	4.7	95.3	100.0(711)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리는 행위	26.7	59.9	23.7	11.4	4.9	7.9	92.1	100.0(308)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11.5	68.4	17.8	10.0	3.8	8.4	91.6	100.0(130)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외의 곳을 때린 행위	7.8	61.0	27.2	4.9	6.9	11.6	88.4	100.0(90)
아이를 잡고 흔든 행위	7.4	80.9	15.3	2.0	1.9	6.7	93.3	100.0(85)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린 행위	5.3	81.4	4.7	7.7	6.1	7.7	92.3	100.0(58)
아이를 꼬집은 행위	5.1	69.5	17.6	9.3	3.6	14.8	85.2	100.0(59)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	1.2	94.1	-	5.9	-	7.2	92.8	100.0(14)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0.7	83.8	-	16.2	-	28.3	71.7	100.0(8)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인식

구분	경험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지른 행위	59.7	38.6	22.9	23.9	14.6	25.4	74.6	100.0(687)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25.7	47.9	25.5	18.6	8.0	18.3	81.7	100.0(296)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	21.6	63.6	21.9	11.2	3.2	9.8	90.2	100.0(248)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	10.4	55.6	27.5	10.6	6.3	12.5	87.5	100.0(78)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행위	10.4	71.5	20.6	4.8	3.1	10.5	89.5	100.0(428)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	1.4	43.5	6.5	17.2	32.8	41.2	58.8	100.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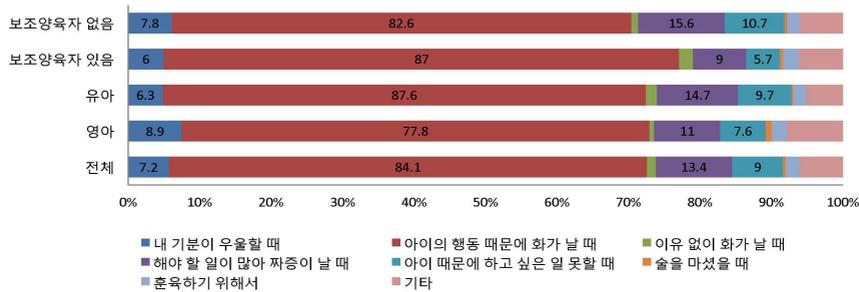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인식

구분	경험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	5.6	34.3	25.1	21.6	19.0	45.9	54.1	100.0(62)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위	1.2	54.0	35.8	10.2	-	23.9	76.1	100.0(13)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1.0	55.7	28.8	15.5	-	24.1	75.9	100.0(12)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위	0.1	100.0	-	-	-	-	100.0	100.0(1)
아이를 혼자 집 혹은 고립된 장소에 있게 한 행위	3.4	71.6	15.8	6.4	6.2	5.3	94.7	100.0(40)
술, 약물, 컴퓨터, 핸드폰에 중독되어 아이를 돌보는데 문제가 있는 행위	1.6	37.3	27.4	24.9	10.4	37.6	62.4	100.0(19)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행위	1.2	48.8	35.1	8.3	7.8	15.2	84.8	100.0(15)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0.3	34.0	66.0	-	-	-	100.0	100.0(3)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인식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가정 내 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은 아이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해야 할 일이 많아 짜증이 날 때, 기분이 우울할 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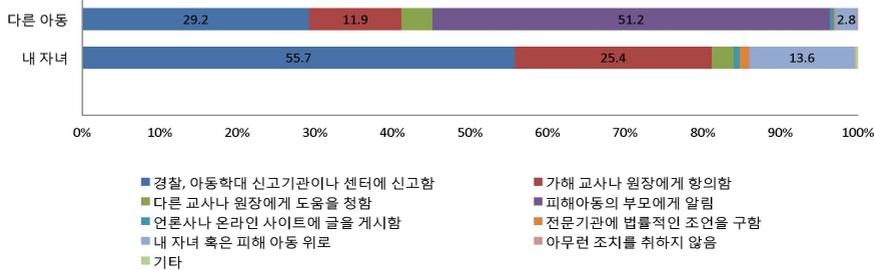
[그림 8] 가정에서 영유아에게 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인식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1순위는 내 자녀일 경우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른 아동일 경우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알린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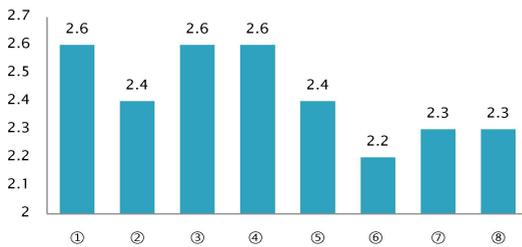
[그림 9]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를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1순위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인식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체별지지도)를 분석한 결과 아직 체별 지지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한두 번 맞고 클 수 있다는 생각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① 설마 부모가 학대하려고?
- ②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 ③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
- ④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
- ⑤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
- ⑥ 있을 수도 있는 일
- ⑦ 이 정도가 아동학대?
- ⑧ 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가?

주: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

[그림 10]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대한 동의 정도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교사 인식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게서 신체적·행동적 징후를 목격한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정서적 학대로 인한 행동적 징후의 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 영유아에게서 신체적·행동적 징후 목격 경험/아동학대 의심 정도

구분	본 적 있음	학대 의심 정도				평균	계
		전혀 의심하지 않음	별로 의심하지 않음	가끔 의심함	매우 의심함		
알 수 없는 멍과 메를 맞은 자국이 있을 때	16.1	0.5	1.6	44.9	53.0	3.5	100.0
다쳤거나 상처가 있어도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을 때	9.5	0.5	3.8	37.3	58.5	3.5	100.0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가 있을 때	4.6	0.6	5.9	39.1	54.4	3.5	100.0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있을 때	2.9	0.4	2.2	33.4	63.9	3.6	100.0
몸에 설명되지 않는 화상이나 골절상을 입은 흔적이 있을 때	1.3	0.4	1.4	24.5	73.7	3.7	100.0
신체적 상처로 자주 병원에 갈 때	0.6	0.5	6.9	38.5	54.1	3.5	100.0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교사 인식

구분	본 적 있음	학대 의심 정도					평균	계
		전혀 의심하지 않음	별로 의심하지 않음	가끔 의심함	매우 의심함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때	49.5	1.6	22.5	52.6	23.3	3.0	100.0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또래들 간에 소외되어 혼자 서성일 때	45.3	2.2	31.6	54.3	11.9	2.8	100.0	
겉이 많고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할 때	43.8	0.8	15.1	53.5	30.6	3.1	100.0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극단적 행동을 할 때	33.5	0.6	10.3	50.1	38.9	3.3	100.0	
활동에서 호기심과 탐구심이 없을 때	31.7	2.6	32.9	46.5	18.0	2.8	100.0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을 때	29.4	1.0	21.0	51.5	26.5	3.0	100.0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순종적일 때	23.5	1.8	22.5	49.6	26.1	3.0	100.0	
강박증이나 공포를 보일 때	11.7	0.5	8.1	46.8	44.6	3.4	100.0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할 때	10.4	1.5	19.8	49.5	29.2	3.1	100.0	
과도한 수면부족 증세를 보일 때	7.1	1.5	16.5	50.4	31.5	3.1	100.0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교사 인식

구분	본 적 있음	학대 의심 정도					평균	계
		전혀 의심하지 않음	별로 의심하지 않음	가끔 의심함	매우 의심함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할 때	12.8	0.8	10.4	44.7	44.0	3.3	100.0	
이유 없이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6.8	0.6	8.1	46.4	44.8	3.4	100.0	
나이에 맞지 않는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일 때	4.4	0.7	7.4	41.4	50.5	3.4	100.0	
신체적으로 접촉을 할 때 깜짝 놀랄 때	3.4	0.5	6.8	41.1	51.6	3.4	100.0	
아픔을 호소하고 견거나 앓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2.9	0.5	5.8	34.9	58.9	3.5	100.0	
입천장의 손상이 있을 때	2.6	1.3	21.5	46.4	30.8	3.1	100.0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때	28.2	0.3	5.5	47.2	47.0	3.4	100.0	
날씨나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당한 옷을 지속적으로 입고 다닐 때	17.2	0.3	5.9	46.8	47.0	3.4	100.0	
어린이집/유치원이 끝난 후 늦은 시간까지 집에서 혼자 있다고 할 때	8.1	0.5	4.2	44.9	50.4	3.5	100.0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을 때	8.0	0.9	5.7	43.9	49.6	3.4	100.0	
항상 배고파하고 영양결핍으로 보일 때	6.7	0.6	6.2	40.6	52.7	3.5	100.0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할 때	4.4	0.6	3.8	37.7	58.0	3.5	100.0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교사 인식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실제로 행한 조치는 부모와 개별면담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향후에는 경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나 센터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 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

구분	목격한 적 있음	본인이 행한 적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치는 행동	7.5	0.9	72.7	27.3	-	-	-	100.0	100.0(11)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1.7	0.1	100.0	-	-	-	-	100.0	100.0(1)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1.3	-	-	-	-	-	-	-	-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0.8	-	-	-	-	-	-	-	-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교사 인식

구분	목격한 적 있음	본인이 행한 적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31.8	17.6	56.8	26.8	11.8	4.5	3.6	96.4	100.0(220)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26.4	19.0	79.7	15.2	4.2	0.8	1.3	98.7	100.0(237)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 주지 않는 행동	20.0	9.9	68.5	20.2	9.7	1.6	3.2	96.8	100.0(124)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19.1	10.2	65.4	22.8	7.9	3.9	3.1	96.9	100.0(127)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6.8	2.9	83.3	8.3	5.6	2.8	2.8	97.2	100.0(36)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2.7	0.3	75.0	25.0	-	-	-	100.0	100.0(4)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2.4	0.6	57.1	42.9	-	-	-	100.0	1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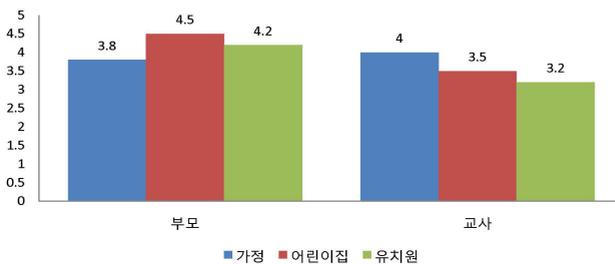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교사 인식

구분	목격한 적 있음	본인이 한 적 있음	빈도				지속성		계(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주 2회 이상	대체로 지속적 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 에서만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0.2	-	-	-	-	-	-	-	-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0.2	-	-	-	-	-	-	-	-
교사가 영유아에게 또래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0.2	-	-	-	-	-	-	-	-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	1.8	0.1	100.0	-	-	-	-	100.0	100.0 D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

- 해당 장소에서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편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부모가 교사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부모는 기관에서의 학대를 교사는 가정에서의 학대를 더 심각하게 인식함.



주: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냄.

[그림 11]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인식 정도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다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 목격 여부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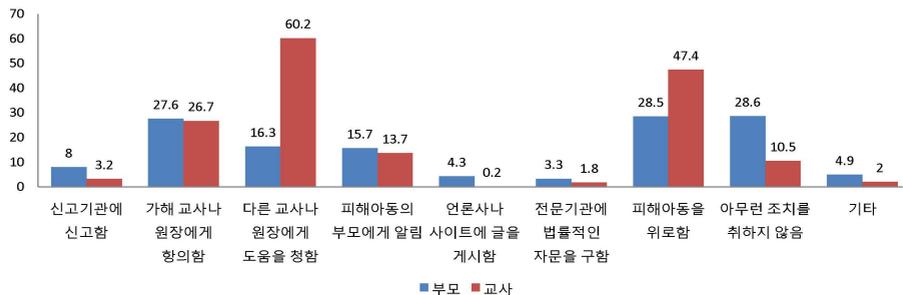
<표 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 목격 비율

구분	부모	교사
영유아의 머리나 몸 등을 손이나 팔, 다리로 치는 행동	6.6	7.5
얼굴, 뺨, 등관 등을 손이나 팔로 때리거나 발로 치는 행동	4.3	1.3
영유아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드는 행동	4.4	1.7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를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3.9	0.8
영유아가 상처 받을만한 심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7.0	2.7
특정 공간에 장시간(10분 이상) 혼자 있게 하는 행동	9.8	6.8
고의적으로 무관심한 행동	14.1	26.4
말 안 듣는 영유아에게 간식이나 점심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행동	8.0	2.4
영유아의 질문을 무시하고 대답을 해주지 않는 행동	11.9	20.0
소리를 크게 지르며 나무라고 화를 내는 행동	18.4	31.8
영유아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고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동	10.5	19.1
영유아가 거부하는데도 몸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행동	1.6	0.2
영유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교사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	1.4	0.2
교사가 영유아에게 토레끼리 서로의 몸이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도록 시키는 행동	0.9	0.2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장시간 그냥 두는 행동	11.5	1.8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교사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그림 1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 사항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인식 및 경험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와 교사 모두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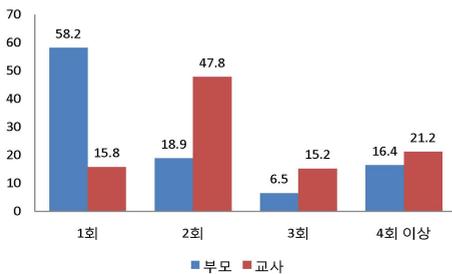
<표 7>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구분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보육(교육)은 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해당 교사의 보복이나 비난 등 해당 아동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부모	48.1	1.7	10.8	2.3	1.1	15.6	15.3	100.0(112)
교사	71.2	11.9	1.7	-	-	5.1	10.2	100.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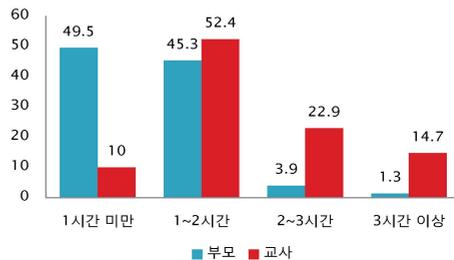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관련 교육

- 아동학대 관련 교육횟수와 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시간은 상대적으로 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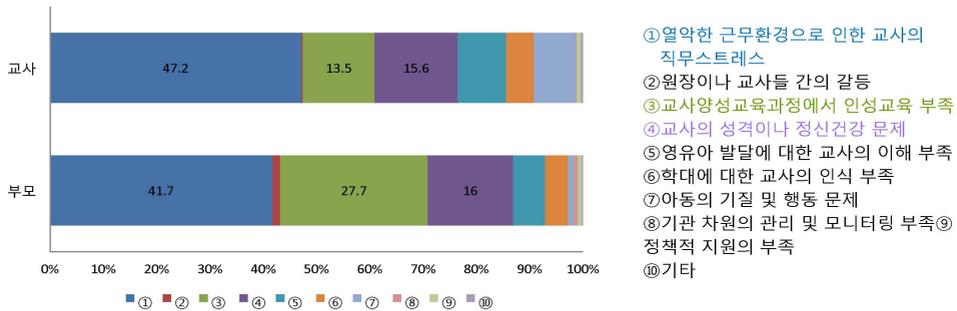


[그림 14] 1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시간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와 교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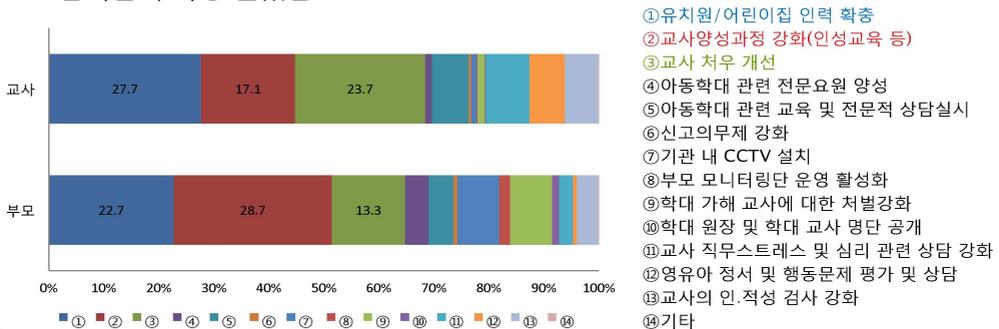


[그림 1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로 부모는 '교사양성과정 강화',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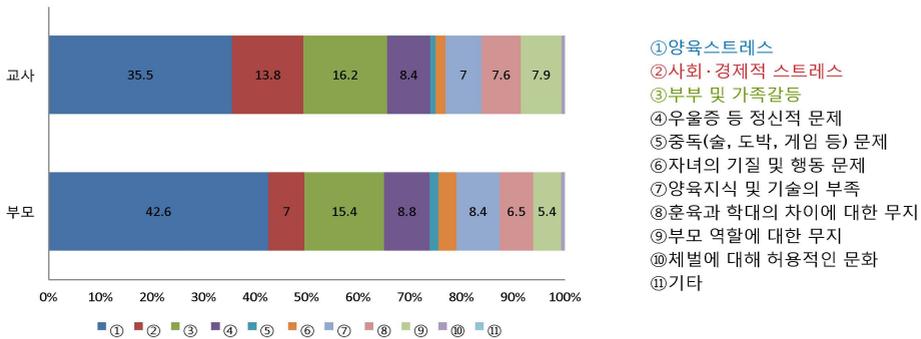


[그림 1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는 부모와 교사 모두 양육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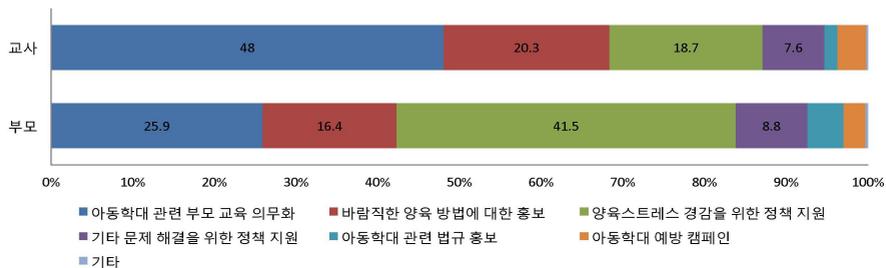


[그림 17]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로 부모는 양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부모 교육 의무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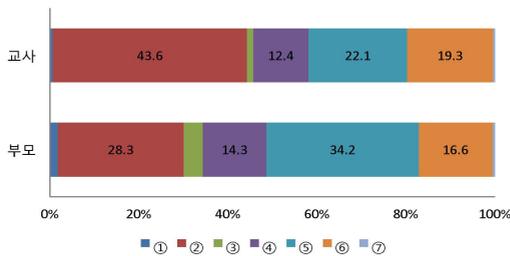


[그림 18]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경우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는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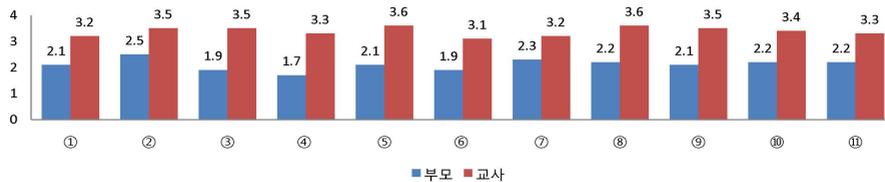
- 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 ②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 ③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신고할 것이라서
- ④ 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보복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서
- ⑤ 남의 가정의 일이고 부모의 양육방식 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 ⑥ 아동학대라는 확신이 없어서
- ⑦ 기타

[그림 19] 아동학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 정도는 모든 항목에 대해 교사의 인지 정도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음.



- ① 유아 대상 체벌을 금지함, ②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유치원을 폐쇄함, ③ 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④ 아동학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⑤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취업을 제한함, ⑥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로 기존에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됨, ⑦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 ⑧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함, ⑨ 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 ⑩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상담,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⑪ 2일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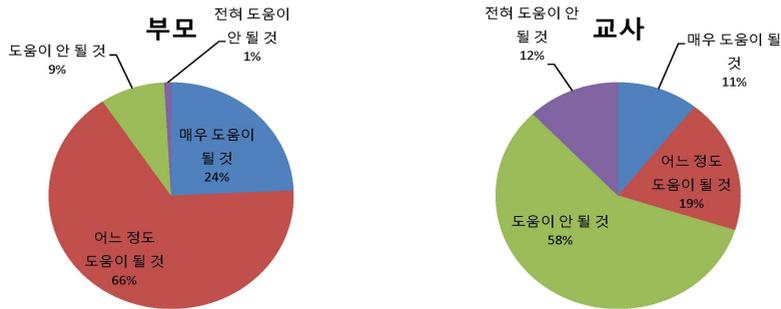
주: 4점 척도임

[그림 20]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 정도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 부모는 4점 척도에 3.1점, 교사는 2.7점으로 부모가 상대적으로 도움이 더 된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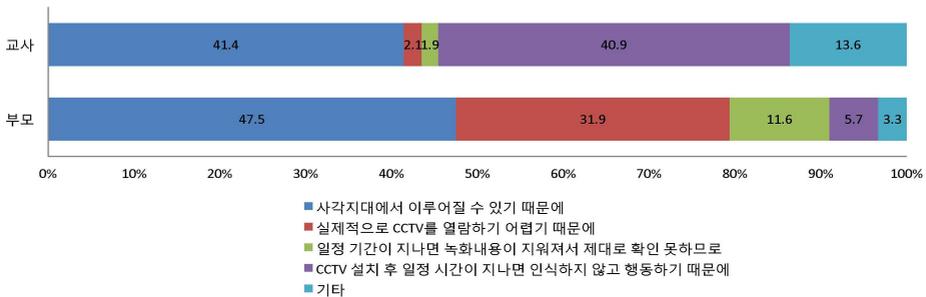


[그림 2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관련 제도 이해 및 요구

-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와 교사 모두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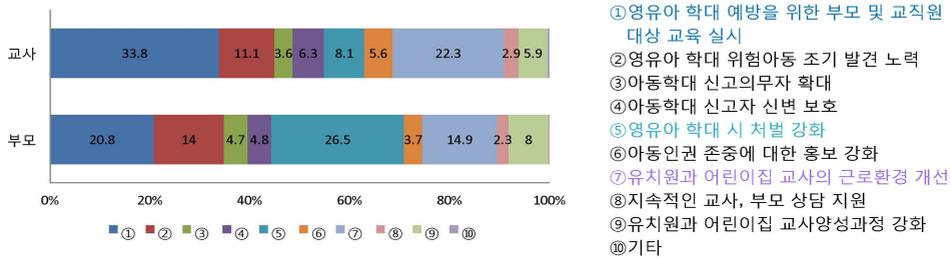


[그림 22]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5. 연구결과: 설문조사 결과 - 인식 비교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조치

-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 부모는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교사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라는 응답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임.



[그림 23]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6. 정책 제언: 정책 방향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수립

-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사전에 차단

□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정책에 비중

-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학대의 극단적인 면이 부각되는 것에 대응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에 초점

6. 정책 제언: 정책 방안

부모를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의무화
-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TV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 부모 자조 모임 활성화
-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교사를 위한 지원

- 현직 교사교육 강화
-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 구조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운영 개선
- 교사 직무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지원
-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존감 강화

6. 정책 제언: 정책 방안 - 부모를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의무화
 - 정부가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비용(고운맘 카드, 아동수당,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연계
 - 지역인프라 최대한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의 주원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성격 문제 및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와 가족 내의 관계 요인임.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센터 활용 방안 고려

6. 정책 제언: 정책 방안 - 부모를 위한 지원

-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와 지역사회의 시간제 보육센터 확대 운영
- TV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 젊은 부모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활용
- 부모 자조 모임 활성화
 -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정부의 상담사 및 강사 지원
-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높은 취약계층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센터 설치

6. 정책 제언: 정책 방안 - 교사를 위한 지원

- 현직교사교육 강화
 -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예비교사 선발과정 강화 및 교사양성교육과정 개선
 - 예비교사 선발 시 인성검사 필수 실시, 면접 시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도구 활용
 - 교사양성교육과정에 인성 교육 보강
- 구조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운영 개선
 -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및 보조 인력 지원을 통해 함께 일하는 환경 조성

6. 정책 제언: 정책 방안 - 교사를 위한 지원

- 교사 직무 부담 감소를 위한 인력 지원
 - 기관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임.
 -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보조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무 부담 및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노력
-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교사 처우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 등 근무환경 개선
- 교사상담 서비스 제공
 -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교사의 자존감 강화
 - 교사의 전문성 인정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참고문헌

본 자료는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2016).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 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최종평가본에 근거하여 작성함.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4. 2. 28).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개입한다.
- 김미정·염동문(2012).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09-430.
- 김수정·정익중(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중단 연구(2013).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평화·윤혜미(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217-238.
- 민대기(2014). 환경적 요인이 아동 성장기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5(2), 203-30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3. 29). 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돌봄시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집.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유정아·정익중(2014). 방임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7, 157-183.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감사합니다.



영유아 학대 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반(협동)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학대 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전영실·윤정숙·유진, 발간 중)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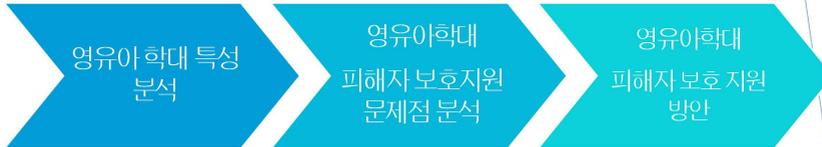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1. 서론

- ▶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미성숙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의 피해는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할 수 있음.
- ▶ 아동학대 중 특히 영유아의 경우는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어린 연령층이라서 방어가능성이 가장 낮은 반면, 피해가능성은 높을 수 있음. 또한 피해의 결과도 더 치명적일 수 있을 것임.
- ▶ 탁희성외(201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2013년에 아동학대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형이 확정된 사건 249건 중 초등학교 입학이전인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가 141건으로 전체의 56.6%로 나타났다(탁희성외, 2014: 35).
- ▶ 영유아는 취약성으로 인해 방임이나 유기 등을 포함한 학대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로 인한 결과도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임.

I. 서론



- ▶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아동복지법위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확정된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영유아인 사건의 수사재판기록 조사를 통하여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살펴 보았음 (총 186건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조사).
- ▶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및 전담검사, 전담 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II.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논의

-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관련 논의

- ▶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시되어 있음. 이러한 법에서 영유아학대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영유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검토해 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에 대한 규정

아동복지법 제22조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를 위한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

아동복지법 제15조

-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를 전문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간의 연계를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학대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서로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에 즉시 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아동복지법 제27조

- 경찰이 아동사망,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직무를 행하면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3)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조치에 대한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응급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9조

-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규정.

4)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일부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나 변경, 보호처분 변경/취소/종료 청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서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수탁기관장, 경찰,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 친권상실, 후견인 변경 등을 통한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상담, 치료,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기소를 유예할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 이는 학대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학대 재발을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임(이무선, 2015: 6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아동학대 행위자가 중상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친권상실의 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6) 아동학대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

아동복지법 제28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종료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재발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아동복지법 제29조

- 여기에는 상담, 교육, 의료적 치료, 심리적 치료 등이 해당될 수 있음.

III. 영유아 학대의 특성 -수사재판기록조사를 중심으로

1. 영유아학대 사건 특성 분석

<표1> 학대유형(가족/비가족학대)-단일학대

		단위: 건(%)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일학대	신체학대	37 (43.0)	53 (53.0)	90 (48.4)
	정서학대	1 (1.2)	7 (7.0)	8 (4.3)
	성학대	2 (2.3)	4 (4.0)	6 (3.2)
	방임	5 (5.8)	4 (4.0)	9 (4.8)
	유기	11 (12.8)	0 (0.0)	11 (5.9)
	매매 및 불법입양	1 (1.2)	1 (1.0)	2 (1.1)
	계	57 (66.3)	69 (69.0)	126 (67.7)

- 단일학대가 67.7%(가족학대의 경우 66.3%, 비가족학대의 경우 69.0%), 중복학대는 32.3%
- 신체학대만 발생한 경우가 48.4%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신체학대+정서학대 15.1%
- 신체학대의 비율은 비가족학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학대의 경우 유기 12.8%, 방임+유기가 5.8% 등으로 나타남.

1. 영유아학대 사건 특성 분석- 학대유형

<표1> 학대유형(가족/비가족학대)-중복학대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위: 건(%)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1 (12.8)	17 (17.0)	28 (15.1)	186 (100)
	신체학대+성학대	2 (2.3)	1 (1.0)	3 (1.6)	
	신체학대+방임	7 (8.1)	6 (5.9)	13 (7.0)	
	신체학대+유기	1 (1.2)	0 (0.0)	1 (0.5)	
	방임+정서학대	0 (0.0)	2 (2.0)	2 (1.1)	
	방임+성학대	0 (0.0)	1 (1.0)	1 (0.5)	
	방임+유기	5 (5.8)	0 (0.0)	5 (2.7)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2 (2.3)	3 (3.0)	5 (2.7)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1 (1.2)	1 (1.0)	2 (1.1)	
	계	29 (33.7)	31 (31.0)	60 (32.3)	
	계	86 (100)	100 (100)	186 (100)	

1. 영유아학대 사건 특성 분석- 학대지속여부 및 지속기간

<표2> 학대지속여부 및 지속기간(가족/비가족학대)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위: 건(%) ^{*)2}
학대 지속여부	지속됨	44 (51.2)	42 (42.0)	86 (46.2)	1,562
	단발성	42 (48.8)	58 (58.0)	100 (53.8)	
	계	86 (100)	100 (100)	186 (100)	
학대가 지속된 경우	일주일 이내	3 (7.3)	16 (39.0)	19 (23.2)	19,268**
	한 달 이내	8 (19.5)	12 (29.3)	20 (24.4)	
	6개월 이내	17 (41.5)	8 (19.5)	25 (30.5)	
	1년 이내	7 (17.1)	5 (12.2)	12 (14.6)	
	1년 이상	6 (14.6)	0 (0.0)	6 (7.3)	
	계	41 (100)	41 (100)	82 (100)	

*p<.05, **p<.01, ***p<.001

- 53.8%는 단발성, 46.2% 지속됨.
- 단발성: 가족학대 48.8%, 비가족학대 58.0%
- 지속됨: 가족학대 51.2%, 비가족학대 42.0%
- 학대 지속된 비가족학대 사건: 일주일 이내 39.0%, 한 달이내 29.3%(한 달 넘지 않는 비율 68.3%)
- 학대 지속된 가족학대 사건: 한달 이상 6개월 이내 41.5%, 1년 이상 14.6%

2. 영유아학대 가해자 특성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3> 가해자성별

구분		가족 학대	비가족 학대	계	단위: 건(%)
가해자 성별	남자	45 (52.3)	14 (14.0)	59 (31.7)	33.293*
	여자	41 (47.7)	86 (86.0)	127 (68.3)	
계		86 (100)	100 (100)	186 (100)	

* $p < .05$, ** $p < .01$, *** $p < .001$

- 여자 68.3%, 남자 31.7%
- 가족학대: 남자 52.3%, 여자 47.7%
- 비가족학대: 여자 86.0%, 남자 14.0%

2. 영유아학대 가해자 특성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4> 가해자 혼인상태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위: 건(%)
미혼	6 (7.1)	20 (20.2)	26 (14.1)	
결혼(재혼)	38 (44.7)	59 (59.6)	97 (52.7)	
동거(사실혼)	18 (21.2)	1 (1.0)	19 (10.3)	
이혼	9 (10.6)	7 (7.1)	16 (8.7)	
별거	12 (14.1)	1 (1.0)	13 (7.1)	
사별	2 (2.4)	5 (5.1)	7 (3.8)	
알 수 없음	0 (0.0)	6 (6.1)	6 (3.3)	
계	85 (100)	99 (100)	184 (100)	

- 결혼(재혼) 52.7%, 미혼 14.1%, 동거(사실혼) 10.3%, 이혼 8.7%, 별거 7.1%
- 가족학대: 결혼(재혼) 44.7%, 동거(사실혼) 21.2%, 별거 14.1%, 이혼 10.6%, 미혼 7.1%, 사별 2.4%
- 비가족학대: 결혼(재혼) 59.6%, 미혼 20.2%, 이혼 7.1%, 사별 5.1%

2. 영유아학대 가해자 특성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5> 가구 월평균 소득

구분	단위: 건(%)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월100만원미만	15 (17.4)	3 (3.0)	18 (9.7)
100만 원 이상-200만원미만	26 (30.2)	25 (25.0)	51 (27.4)
200만 원 이상-300만원미만	18 (20.9)	13 (13.0)	31 (16.7)
300만 원 이상-400만원미만	2 (2.3)	4 (4.0)	6 (3.2)
400만 원 이상-500만원미만	2 (2.3)	4 (4.0)	6 (3.2)
500만 원 이상	3 (3.5)	0 (0.0)	3 (1.6)
알 수 없음	20 (23.3)	51 (51.0)	71 (38.2)
계	86 (100)	100 (100)	186 (100)

- 가족학대: 100만원대 30.2%, 200만원대 20.9%, 100만원 미만 17.4%, 500만원 이상 3.5%, 300만원대 2.3%, 400만원대 2.3%, 알 수 없음 23.3%
- 비가족학대: 100만원대 25.0%, 200만원대 13.0%, 알 수 없음 51.0%
-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영유아학대 발생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2. 영유아학대 가해자 특성 분석- 학대동기(가해자 기준)

<표6> 가해자 진술에 따른 범행동기(가족/비가족 학대)

구분	단위: 건(%)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피해 아동이 가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말을 안 들어서)	15 (17.4)	38 (38.0)	53 (28.5)
피해 아동이 잘못을 저질러(사성한 장난, 거짓말, 물건 고장 냄 등)	10 (11.6)	22 (22.0)	32 (17.2)
울거나 보채서 (시그림개 해서)	16 (18.6)	12 (12.0)	28 (15.1)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13 (15.1)	2 (2.0)	15 (8.1)
술에 취해 술김에	6 (7.0)	0 (0.0)	6 (3.2)
스트레스성	2 (2.3)	3 (3.0)	5 (2.7)
귀찮아서	3 (3.5)	0 (0.0)	3 (1.6)
관심 없음(양육)	2 (2.3)	0 (0.0)	2 (1.1)
경제적 이유	16 (18.6)	0 (0.0)	16 (8.6)
힘의 부인 (의도치 않음 또는 전면 부인)	1 (1.2)	16 (16.0)	17 (9.1)
기타	2 (2.3)	7 (7.0)	9 (4.8)
계	86 (100)	100 (100)	186 (100)

3. 영유아학대 피해자 특성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7> 사건피해자 연령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단위: 건(%)
	건	(%)			건
0세	17	(19.8)	8	(8.0)	25 (13.4)
1세	8	(9.3)	17	(17.0)	25 (13.4)
2세	9	(10.5)	19	(19.0)	28 (15.1)
3세	12	(14.0)	19	(19.0)	31 (16.7)
4세	7	(8.1)	12	(12.0)	19 (10.2)
5세	16	(18.6)	13	(13.0)	29 (15.6)
6세	3	(3.5)	10	(10.0)	13 (7.0)
7세	14	(16.3)	2	(2.0%)	16 (8.6)
계	86	(100)	100	(100)	186 (100)

- 가족학대: 0세가 가장 많음.
- 비가족학대: 2세와 3세가 각각 19.0%.
- 만 3세 미만인 피해자의 비율이 높아 학대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가 많음.

3. 영유아학대 피해자 특성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8> 사건피해자 성별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N ²	단위: 건(%)
	건	(%)				건
남자	44	(51.8)	62	(62.0)	106	1,967
여자	41	(48.2)	38	(38.0)	79	
계	85	(100)	100	(100)	185	

- 남자 영유아 57.3%로 다소 더 높은 비율.
- 비가족학대: 남자 영유아 피해자 62.0%, 여자 피해자 38.0%
- 가족학대: 남자 피해자 51.8%, 여자 피해자 48.2%

3. 영유아학대 피해자 특성 분석- 가해자와의 관계

<표9> 가해자와의 관계(가족/비가족학대)

구분	가해자와의 관계(가족/비가족학대)		단위: 건(%)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친자녀	62 (72.1)	0 (0.0)	62 (33.3)	
양, 계자녀/동거 애인의 자녀	21 (24.4)	0 (0.0)	21 (11.3)	
친척	3 (3.5)	0 (0.0)	3 (1.6)	
친구/어울의 아이	0 (0.0)	3 (3.0)	3 (1.6)	
학원/학교/보육원생	0 (0.0)	85 (85.0)	85 (45.7)	
모르는 관계	0 (0.0)	7 (7.0)	7 (3.8)	
기타	0 (0.0)	5 (5.0)	5 (2.7)	
계	66 (100)	100 (100)	166 (100)	

- 가족학대: 친자녀 72.1%, 양, 계자녀/동거 애인의 자녀 24.4%, 친척 관계 3.5%
- 비가족학대: 학교/학원/보육원생 85%, 모르는 관계 7%
-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의존하는 상대가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임.

3. 영유아학대 피해자 특성 분석- 학대 피해결과

<표10> 피해결과유형(가족/비가족학대)

구분	가해자와의 관계(가족/비가족학대)		단위: 건(%)		χ ²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신체피해	55 (64.0)	68 (68.0)	123 (66.1)	6.040*	
정신적 피해만 있음	22 (25.6)	30 (30.0)	52 (28.0)		
사망	9 (10.5)	2 (2.0)	11 (5.9)		
계	86 (100)	100 (100)	186 (100)		

*p<.05, **p<.01, ***p<.001

- 신체피해 66.1%, 정신적 피해 28.0%, 피해자사망 5.9%
- 가족학대: 신체피해 64.0%, 정신적 피해 25.6%, 사망 10.5%
- 비가족학대: 신체피해 68.0%, 정신적 피해 30.0%, 사망 2.0%
- 가정내에서 보호자가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비가족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4. 영유아학대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분석- 피해자 진술 관련 현황

<표11> 사건처리단계 시 피해자 진술 여부

구분	단위: 건(%)			χ^2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피해영유아	23 (26.7)	13 (13.0)	36 (19.4)	21.177**
보호자	22 (25.6)	46 (46.0)	68 (36.6)	
제3자	30 (34.9)	17 (17.0)	47 (25.3)	
보호자+제3자	3 (3.5)	12 (12.0)	15 (8.1)	
피해영유아+보호자	5 (5.8)	10 (10.0)	15 (8.1)	
피해영유아+제3자	3 (3.5)	2 (2.0)	5 (2.7)	
계	86 (100)	100 (100)	186 (100)	

* $p<0.05$, ** $p<0.01$, *** $p<0.001$

4. 영유아학대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분석- 진술장소 및 진술조력인 도움여부

<표12> 진술장소 및 진술조력인 도움여부

구분	단위: 건(%)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영유아 진술시 진술 장소			
경찰	4 (13.8)	6 (25.0)	10 (18.9)
아동보호전문기관	5 (17.2)	2 (8.3)	7 (13.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센터(해바라기센터 포함)	7 (24.1)	10 (41.7)	17 (32.1)
원스톱 지원센터	9 (31.0)	5 (20.8)	14 (26.4)
피해아동의 집	1 (3.4)	0 (0.0)	1 (1.9)
기타	3 (10.3)	1 (4.2)	4 (7.5)
계	29 (100)	24 (100)	53 (100)
진술 조력인 도움 여부			
예	10 (38.5)	5 (23.8)	15 (31.9)
아니요	16 (61.5)	16 (76.2)	32 (68.1)
계	26 (100)	21 (100)	47 (100)

4. 영유아학대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분석- 관련 기관 개입 현황

<표13>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및 사건관리회의 개최 여부

단위: 건(%)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여부				
예	51 (59.3)	48 (48.0)	99 (53.2)	2,372
아니오(연급없음)	35 (40.7)	52 (52.0)	87 (46.8)	
계	86 (100)	100 (100)	186 (100)	
사건관리회의 개최여부				
예	0 (0.0)	6 (5.9)	6 (3.2)	2,372
아니오(연급없음)	86 (100)	94 (94.0)	180 (96.8)	
계	86 (100)	100 (100)	186 (100)	

*p<.05, **p<.01, ***p<.001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사례 **53.2%**(가족학대: **59.3%**, 비가족학대: **52.0%**)
- 가족학대 사건 가운데 사건관리회의가 열린 사례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음.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영유아학대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분석- 응급조치 현황

<표14>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가족/비가족학대)

단위: 건(%)

구분	가족학대	비가족학대	계
가해자와 격리	26 (31.3)	8 (6.3)	34 (19.0)
보호시설 인도	34 (41.0)	2 (2.1)	36 (20.1)
의료기관 인도	17 (20.5)	5 (5.2)	22 (12.3)
없음	5 (6.0)	9 (9.4)	14 (7.8)
알 수 없음	19 (22.9)	75 (76.1)	94 (52.5)
계	83 (100)	96 (100)	179 (100)

- 가족학대: 보호시설 인도 **41%**, 가해자와 격리 **31.3%**, 의료기관 인도 **20.5%**
- 비가족학대: 가해자와 격리 **8.3%**, 의료기관 인도 **5.2%**, 보호시설 인도 **2.1%**

4. 영유아학대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분석- 임시조치 현황

<표15> 사건처리단계에서 학대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현황

구분	단위: 건(%)		
	영아	유아	계
퇴거	4 (50.0)	3 (13.0)	7 (22.6)
접근금지	5 (62.5)	21 (91.3)	26 (83.9)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3 (37.5)	8 (34.8)	11 (35.5)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1 (12.5)	3 (13.0)	4 (12.9)
계	8	23	31

- 접근금지 83.9%, 전기통신을 통한 피해자 접근 금지 35.5%, 퇴거명령조치 22.6%, 친권행사제한또는 정지 12.9%
- 유아: 접근금지 91.3%,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34.8%, 퇴거명령 13.0%, 친권행사제한또는 정지 13.0%
- 영아: 접근금지 62.5%,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37.5%, 퇴거명령 50.0%, 친권행사제한또는 정지 12.5%

IV. 영유아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

1. 사건신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고유영역 불명확

- ▶ 우리 법에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자, 관련자 등의 조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기관의 역할이 중첩되면서 어느 범위까지가 고유의 영역인지 명확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됨.
- ▶ 향후 예상되는 두 직책간의 의견불일치와 범위 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실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지원방안 불충분

- ▶ 영유아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의존욕구가 강하고 보호자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다는 점이 특징임.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진술에 간섭하고 피해아동과의 분리를 방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을 가장 힘들다고 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영유아학대 사건의 일차적 현장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행위자와의 분리**라고 함.
- ▶ 둘째, **피해자 보호명령 집행단계에서 영유아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 및 치료시설들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음.
- ▶ 셋째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아동과의 분리나 격리 등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결정이 없다는 점**도 제도의 공백으로 보임.

3.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결 후 사후관리 미흡

- ▶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종결하여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실질적으로 원가정 회복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법률상 규정된 것은 없음.
- ▶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결 시 아동과 그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통상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알려져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현황이나 프로그램 부족 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신고조사부터 모니터링까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불충분할 경우 서비스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4.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전문적 교육·치료 미흡

- ▶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비롯, 실형 선고시 형집행 기간 동안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게 성행 개선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 그러나, 이처럼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료나 교육은 아직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임.

5. 기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 ▶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임시조치나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 기관내 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을 목격하여 트라우마를 겪는 다른 아동이 존재할 수 있어 피해아동 보호명령만으로 학대사건을 온전히 다루기 힘들.
- ▶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내 학대행위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지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V. 영유아학대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1. 학대현장에 출동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대상 매뉴얼 개발

- ▶ 아동학대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함.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을 통해 신고를 받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서로간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에 즉시 출동하게 되어있음.
- ▶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 대응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한다면 영유아학대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2. 사건관리회의의 활성화

- ▶ 사건관리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영유아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 ▶ 사건관리회의는 개별 영유아 학대 피해자에게 최적의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이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사건관리회의를 한 비율은 3%대로 거의 없었음.
- ▶ 가능한 사건관리회의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3.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영유아 학대피해자 지원강화

- ▶ 첫째,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조사·심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제37조)을 준용하도록 해서 진술조력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진술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30%를 조금 넘었음. 앞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특성을 잘 아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영유아 학대피해자 지원강화

- ▶ 둘째, 피해영유아가 심리적 안정을 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조사·심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을 준용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고 있음.
-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동석하게 해야 할 것임.

3.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영유아 학대피해자 지원강화

- ▶ 셋째, 피해영유아의 진술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분석전문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문가의견조회의 규정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음.
-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를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 조정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에 의하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마다 연장하는 것은 절차적 번거로움을 가중시킴.
- ▶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5. 영유아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 및 전문적인 치료 제공

- ▶ 영유아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 및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
- ▶ 아동복지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할 경우 전문치료기관 등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음.
-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학대피해를 받아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치료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치료 보호하는 시설임.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으로 피해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보호위탁되거나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특히 영유아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원터’ 는 없음.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영유아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보호혜택이나 의료적 지원, 상담이나 치료 등의 심리적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음.
- ▶ 아동보호지원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영유아의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설적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정법원 관사외의 자문에서도 영유아학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6. 가정위탁의 적극적 활용

- ▶ 보호자로부터 장기간 분리되거나 격리되는 영유아를 위하여 가정위탁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영유아 학대피해자 중 보호자로부터 격리되거나 장기간 분리되는 영유아에게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하여 가정위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7. 학대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 영유아 학대 피해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이 필요함.
- ▶ 이동보호전문기관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하던가, 아니면 이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필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또한 이동학대 발생 가정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8. 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교정

- ▶ 영유아 학대 피해자에게 원가정 보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때, 가해자의 치료 및 교정을 통하여 원가정 이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 앞으로 영유아 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 및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전문인력, 프로그램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을 것임.

9.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로의 정비

- ▶ 전문가와의 면담 중, “사회복지서비스가 부처마다 산재하여 담당하는 사람들 역시 정보를 잘 모르고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여 기관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 (판사와의 면담 인용)는 의견이 있었음.
-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중복여부나, 통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혜자나 서비스 안내자들이 보다 손쉽게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영유아 학대 현황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일반(협동)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학대
현황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장화정·강지영·김경희·김미경, 발간 중)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및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장화절 감지영 김경희 김미경

Contents

01. 연구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및 방법
03.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 기초분석
 - 심화분석
 - 신고경위분석
04. 가이드라인 개발
05. 연구의 함의 및 제언

#0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영유아 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약 28%*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5세 이하 영유아의 비율은 약 60%
- 영유아일수록 치명적인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영유아의 경우,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고, 자기방어능력이 없으며 의사표현의 한계가 있음
- 학대가 발생되어도 발견될 가능성이 적음
- 영유아 시기에 경험한 학대는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신체증상, 성격 및 심리적 특성, 행동문제 등 광범위한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줌
- 국내·외 문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영유아 학대특성 및 예측 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전황보고서

#02

**연구내용
및
방법**

- **영유아 학대에 대한 특성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 영유아 학대의 현황 및 실태, 영유아 학대의 원인 및 학대 예측 요인 등에 대한 문헌 연구 실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유형에 따른 신체적·행동적 징후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FIND 체크리스트
 - 영국 NICE 아동학대 관련 임상적 징후 (When to suspect child maltreatment)
 - 일본 후생노동성 아동학대 위험요인
 - Child Abuse SOURCEBOOK 영유아 학대 징후관련 질문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학대 사례 분석**
: 영유아 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유형, 학대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여 영유아 학대 현황 제시
 - 기본현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총 51,304건 중 학대판정사례 34,934건
 - 심화분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영유아 학대사례 중 (재신고사례 제외, 스크리닝척도 미적용사례 제외, 가구당 영유아 1인 선택, 영유아 1인당 행위자 1인 선택)
로지스틱 회귀분석 5,785건(가정내:4,420건, 가정외:1,365건),
잠재집단 분석 3,503건(가정내:3,112건, 가정외:391건)
 - 신고경위분석: 2015년 영유아 학대 판정 건수 3,336건 중 204건 추출
- **영유아 학대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 영유아 학대 인식 증진과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예방적 측면 가이드라인과 누구나 쉽게 영유아 학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후 대처단계에 영유아 학대 발견 체크리스트 개발하고 활용방안 제시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기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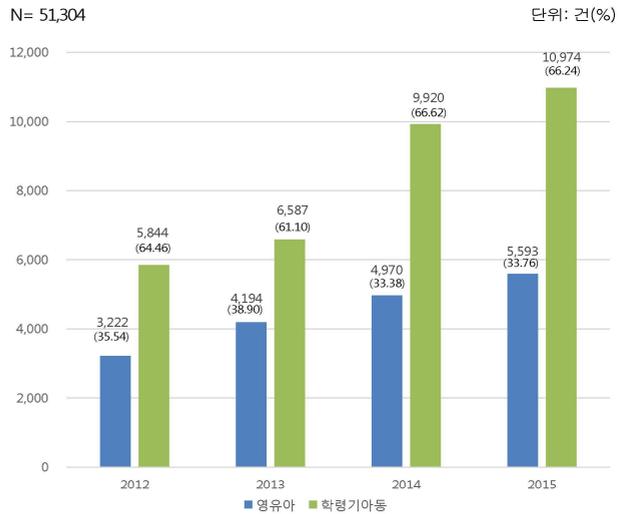
○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연구대상

구분	내용			
자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례	2012	9,066건		
	2013	10,781건		
	2014	14,890건		
	2015	16,567건		
	계	51,304건		
유형	응급 학대의심사례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한 사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		
	동일신고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되는 경우		
	일반상담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의 경우		
연령구분	영아	만 0세 ~ 2세	학대판단사례	10,248건
	유아	만 3세 ~ 6세		
	학령기 아동	만 7세 이상	24,686건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기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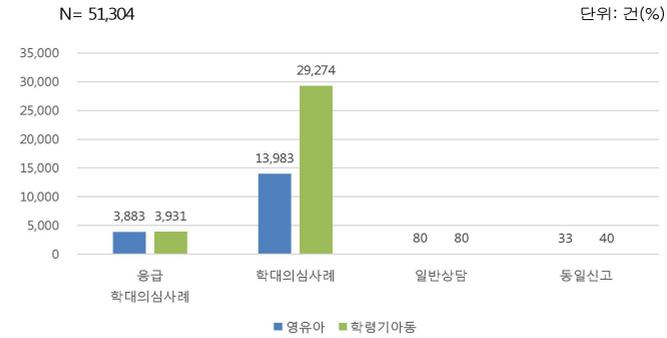
○ 연도별 영유아 학대 사례수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기초분석

○ 영유아 대 학령기 아동 신고접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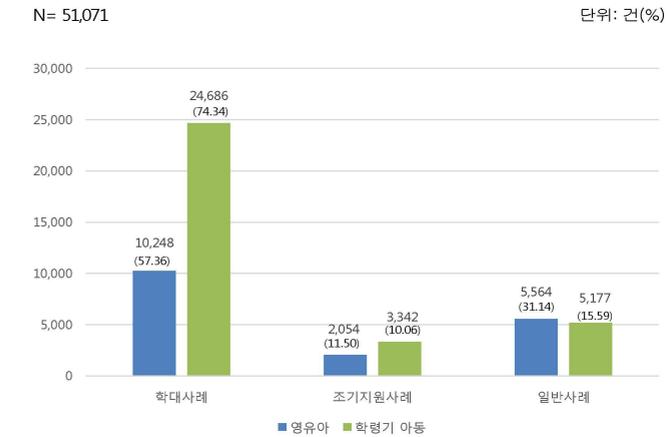


전체학대의심사례(응급학대의심사례+학대의심사례)
=51,071건
전체사례 51,304건의 9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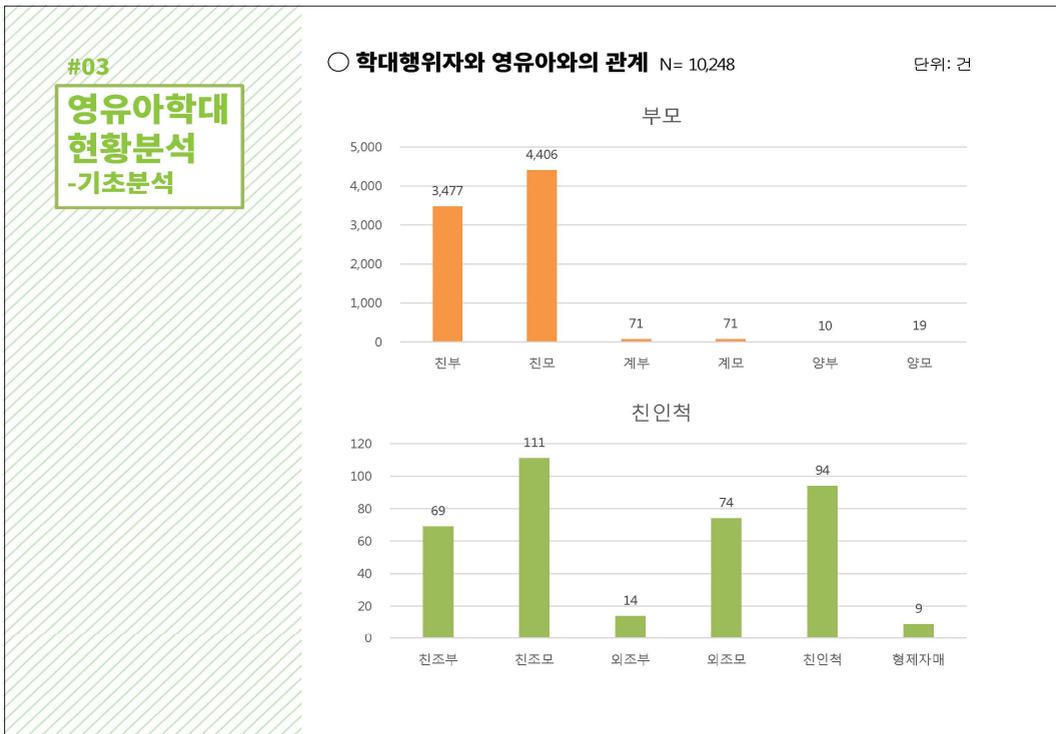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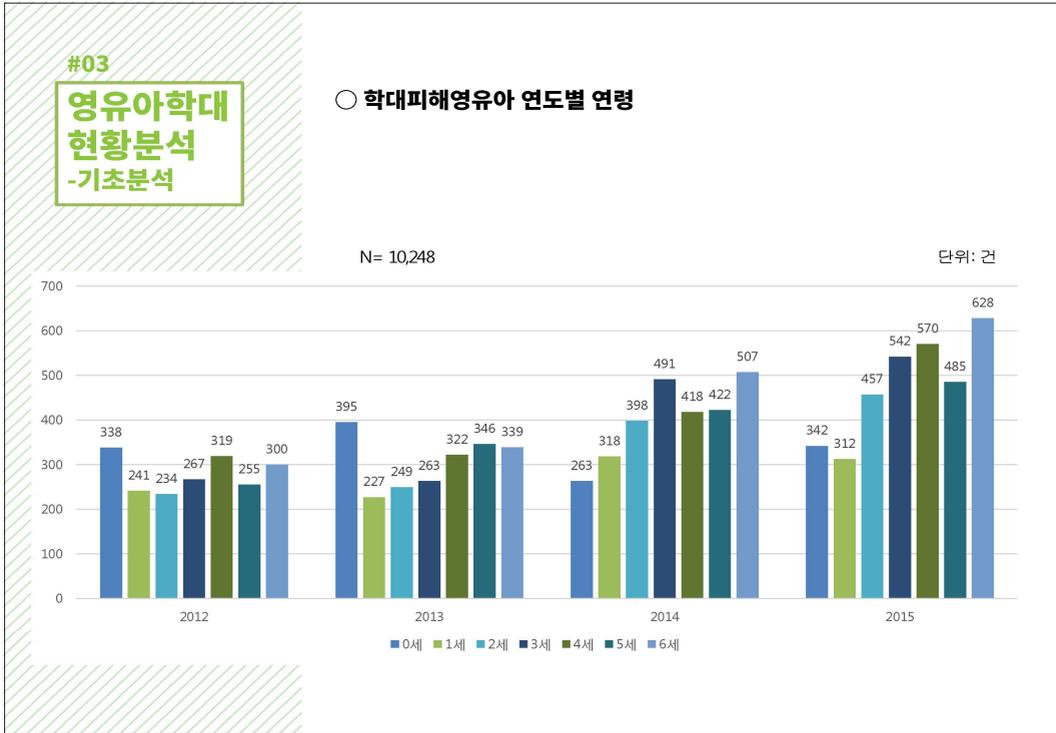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기초분석

○ 영유아 대 학령기 아동 사례판단유형



전체학대의심사례 51,071건 중 학대판단사례는34,934건(68.4%)
영유아 10,248건, 학령기 아동 24,68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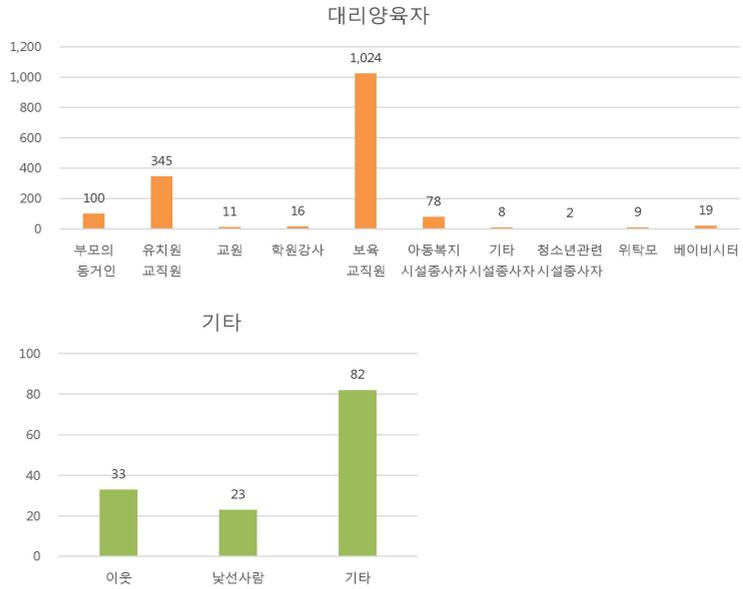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기초분석

○ 학대행위자와 영유아와의 관계 N= 10,248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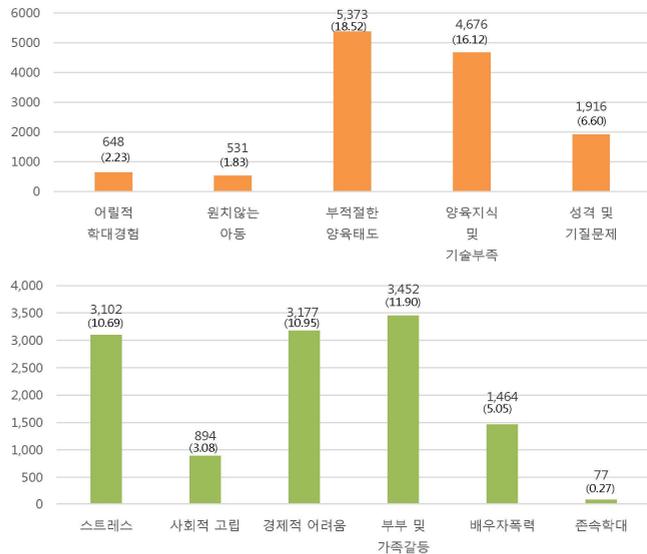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기초분석

○ 영유아 학대행위자 특성 N= 10,248

단위: 건(%)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기초분석

○ 영유아 학대행위자 특성

N= 10,248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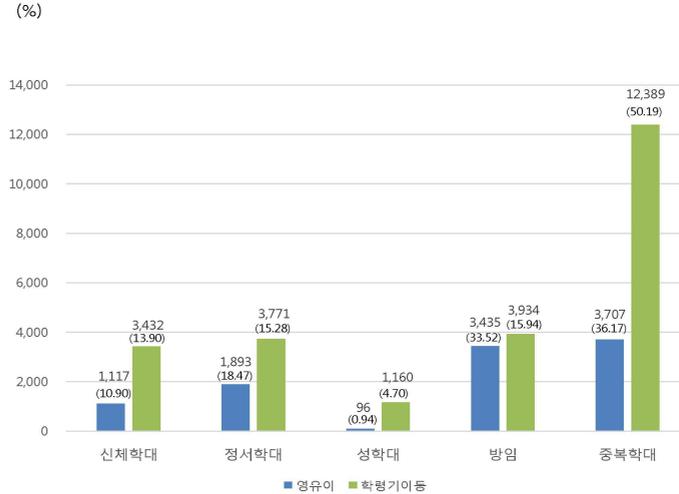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기초분석

○ 영유아 대 학령기 아동 학대유형

N= 34,934(영유아:10,248, 학령기아동:24,686)

단위: 건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심화분석**

○ 심화분석

- 분석대상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영유아 학대사례 중 재신고사례 제외, 스크리닝척도 미적용사례 제외, 가구당 영유아 1인 선택, 영유아 1인당 행위자 1인 선택

- 로지스틱 회귀분석

- 일반사례 집단에 비해 학대사례와 조기지원사례를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봄

가정 내 분석	가정 외 분석
4,420건	1,365건

- 잠재집단분석

- 영유아 학대로 판정된 사례들이 몇 개의, 어떤 특성을 가진 하위집단으로 분류되는지 파악함

가정 내 분석	가정 외 분석
3,112건	391건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심화분석**

○ 가정 내 영유아학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반사례 기준 영유아학대사례	일반사례 기준 조기지원사례
영유아 특성	여아가 남아에 비해 80% 높음 발달문제 행동 1개 증가 시 50% 높아짐	없음
행위자 특성	어릴 적 학대 경험 시 160% 증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시 85% 증가 스트레스 경험 시 99% 증가 경제적 어려움 시 61% 증가 알콜 남용 시 254% 증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시 48% 증가 스트레스 경험 시 49% 증가 경제적 어려움 시 69% 증가 알콜 남용 시 121% 증가
사례 특성	신고의무자 신고 시 65% 증가 신체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1,345%증가 정서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2,014%증가 방임 행위 1개 증가 시 4,165%증가 성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511%증가 학대사실 보고인 수 1명 증가 시 590%증가 격리조치 필요요인 수 1개 증가 시 968%증가	신체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473%증가 정서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413%증가 방임 행위 1개 증가 시 269%증가 학대사실 보고인 수 1명 증가 시 43%증가 격리조치 필요요인 수 1개 증가 시 368%증가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심화분석

○ 가정 외 영유아학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반사례기준 영유아학대사례	일반사례 기준 조기자원사례
영유아 특성	없음	없음
행위자 특성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시 383% 증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시 122% 증가
사례특성	신체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875%증가 정서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9,281%증가 방임 행위 1개 증가 시 12,420%증가 성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9,785%증가 학대사실 보고인 수 1명 증가 시 134%증가 격리조치 필요요인수 1개 증가 시 656%증가	신체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152%증가 정서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756%증가 방임 행위 1개 증가 시 1660%증가 성학대 행위 1개 증가 시 787%증가 학대사실 보고인 수 1명 증가 시 29%증가 격리조치 필요요인수 1개 증가 시 339%증가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심화분석

○ 가정 내 영유아학대 잠재집단 분석

	방임집단	정서학대집단	저위험집단	신체 및 정서학대집단
영유아특성	영유아 평균연령 2세	영유아평균연령 3세	영유아평균연령 3세	영유아평균연령 3세
행위자 특성	여성일 확률 80% 행위자 장애,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가구 확률 높음	행위자의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성격 및 기질 문제,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폭력, 알콜 남용 확률 높음	대체로 위험 요인 확률 낮음	행위자의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성격 및 기질 문제,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례특성	성학대 발생 가능성 10%		학대 행위 빈도 수 낮음	정서학대와 중복발생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심화분석**

○ 가정 외 영유아학대 잠재집단 분석

	기타학대집단	성학대 및 기타학대집단
영유아특성	영유아 평균연령 3세	영유아평균연령 4세
행위자 특성	여성일 확률 95% 평균연령 36세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성격 및 기질문제 스트레스	남성일 확률 74% 평균연령 48세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성격 및 기질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례특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신고경위 분석**

○ 영유아 학대 신고경위 분석

- 분석대상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2015년도 사례 중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1,710건이고, 그 중 영유아학대 건수는 3,336건(28.5%)

· 이 사례들 중 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례와 가족 외에서 발생한 사례의 규모에 따라 추출 → 총 204건

- 분석방법

· 어떤 상황에서 영유아 학대로 신고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신고경위로 작성된 내용 분류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신고경위 분석

○ 신체학대 관련 행위

유형	사례예시	빈도
영유아를 때림	아동부는 화가 나면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아동을 심하게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23 (24.2)
	아동이 하원 후 가정으로 돌아가 아동모에게 "선생님이 때려서 아팠어. 그래서 눈물이 났어"라고 표현했고 아동이 그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명, 상흔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용모를 살폈는데 얼굴쪽에 상흔이 있어 바로 본 기관에 신고를 하였다고 이야기함 친부가 음주 후 귀가하여 막대기로 첫째 아동의 신체를 때려 상흔(명)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함	57 (60.0)
영유아를 누름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에게 못 움직이게 다리와 양팔로 누름 베개로 아동을 누름	4 (4.2)
영유아를 꼬집음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원장에게 CCTV/녹화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바, 점심을 먹던 아이들의 옆구리를 꼬집는 장면 등이 확인	3 (3.2)
영유아를 밀침	아동 모에 의하면 아동이 유치원 담임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함. 아동은 그 당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며 그 당시를 똑같이 재연하였다고 함	5 (5.3)
영유아를 찌름	보육직원이 바늘로 아동의 손가락 사이를 콕콕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함	3 (3.2)
합계		95 (100.0)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신고경위 분석

○ 정서학대 관련 행위

유형	사례예시	빈도
영유아에게 소리지름	친모는 아동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아동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고 함	18 (69.2)
영유아에게 겁을 줌	친부는 9월 26일 부부싸움 중에 칼을 들고 친모 및 아동들을 위협하며 "같이 죽자"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함	6 (23.1)
영유아에게 물건을 던짐	아동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다고 함	1 (3.8)
억지로 밥을 먹임	밥을 먹지 않는 영아에게 억지로 밥을 먹임	1 (3.8)
	0세~1세 아동에게 국, 죽, 밥, 반찬을 섞어서 먹게 함	
합계		26 (100.0)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신고경위 분석

○ 성학대 관련 행위

유형	사례예시	빈도
영유아성기접촉	최초 신고자는 피해아동이 "아빠가 손가락으로 만졌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함	1 (9.1)
부부관계 노출	친모와 계부는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조기 성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했다고 함	1 (9.1)
영유아이상행위모방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모가 하는 성행위를 따라함	8 (72.7)
성폭행	친모가 낯선 남자를 가정으로 오게했고 고스톱을 치다가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함	1 (9.1)
합계		11 (100.0)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신고경위 분석

○ 방임 관련 행위

유형	사례예시	빈도
영유아를 돌보지 않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 양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및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신고됨	32 (43.2)
보호자 없이 방치	친모는 친부와의 다툼으로 아동들을 주거지에 놔둔 채 가출을 하였음. 아동이 친모를 따라가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친모는 혼자 가출을 한 상황임	22 (29.7)
냄새, 더러움	아동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 아동에게서 냄새가 나며, 방에서도 기저귀와 옷가지, 씻지 않은 우유병 등이 쌓여 있고 악취가 매우 심해 신생아인 아동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1 (1.4)
검진 및 검사 미실시	아동이 지적장애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친모는 아동의 장애판정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함	2 (2.7)
병원 무단이탈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수액을 뽑아버리고 의사의 동의 없이 아동을 데리고 병원을 무단이탈했다고 함	1 (1.4)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	아동이 만 3세이나 현재까지 아동을 출생신고하지 않아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음	2 (2.7)
방에 가둠	행위자는 본인이 담당하는 영아반 아동들을 방에 가두고 아동이 울어도 달래주지 않고 계속 울도록 내버려둠. 또한 아동들이 방에서 나오려고 하면 문앞에서 아동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문을 막음	14 (18.9)
합계		74 (100.0)

#03

영유아학대
현황분석
-신고경위 분석

○ 기타 행위

유형	사례예시	빈도
영유아울음소리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만3세 정도로 추정되는 아동이 집 밖에서 울고 있다고 지구대로 신고가 접수됨 어린이집 근처 이웃이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수시로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아동들을 방치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됨	6 (27.3)
영유아 이상행동 관찰	아동에게 '엄마싫어?'라고 물었으며 이에 아동은 고개를 끄덕고덕했으며, '엄마랑 같이 놀아.'라는 말에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고 함. 아동은 친모와 함께 있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아동 친모는 아동이 자다가 갑자기 울면서 깨고 보채는 행동이 있었다고 함. 또한 아동이 어린이집 차량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함	4 (18.2)
부적절한 보호	친모, 아동, 아동의 동생이 00병원 응급실 앞 벤치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함	2 (9.1)
영유아 상해에 대한 부모반응	아동 담당주치의의 말에 따르면 아동은 현재 뇌출혈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함.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너무 태연한 모습을 보여 학대의심으로 신고하였다고 함	1 (4.5)
등원거부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표현을 자주 했다고 함	9 (40.9)
합계		22 (100.0)

#04

가이드라인
개발

○ 문헌고찰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처 방법 및 지침제공

: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요인 중 양육태도와 지식, 스트레스 등을 중심으로 원인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침 제공과 대처방법 및 학대징후 제시

○ 사전예방단계

- 영유아 권리 존중 양육

- : 영유아 권리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양육
- : 영유아 권리에 대한 민감성 및 발달상황에 대한 이해
- : 문제행동 원인에 대한 이해
- : 권리의식에 대한 점검 및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관심 필요

- 스트레스 관리

- : 보호자 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밀접한 연관됨
-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평가 및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분노조절

- : 학대행위자의 불안, 분노 등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함
- : 바람직한 분노조절 방법으로는 생각중단하기, 관심바꾸기, 이완하기와 명상하기, 근육이완, 공감하기 등이 있음.

#04

**가이드라인
개발**

○ 사후대처단계

- 영유아 학대 발견 체크리스트

: 영유아 학대의 사후적 측면에서 조기에 학대를 발견하고 적극 대처함으로써 심각한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와 교사 그리고 이웃 등 주변사람들이 관찰(목적)된 정보로 학대징후를 의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지침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

- 사용대상

- :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
- : 영유아 관련 기관 종사자(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 : 일반인

- 적용대상

: 만 0세 ~ 만 6세 영유아

#04

**가이드라인
개발**

○ 체크리스트 내용

1. 영유아에게 직접 학대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아동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듣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해야한다.

- 영유아를 때리는 경우(누름, 꼬집음, 찌름, 밀침, 발로 참, 도구로 때림 등)
- 영유아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욕설, 욕박지름 등)
- 영유아를 위협하는 경우(때리려는 시늉, 영유아를 향해 물건을 던짐, 부싸움으로 영유아의 우는 소리가 들림 등)
- 영유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비난, 비교, 부정하는 말등)
- 영유아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만지기, 뽀뽀 등)
- 영유아를 돌보지 않는 경우(뜨래에 비해 왜소함, 혼자 둠, 적절한 의식주 제공하지 않음, 비위생적 환경, 의료적 처치하지 않음 등)
- 영유아의 외부활동을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집에 가둠, 영유아 보육기관에 등원시키지 않음 등)

#04

**가이드라인
개발**

○ 체크리스트 내용

2. 영유아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나 흔적이 발견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이 관찰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해야 한다. 단, 영유아가 진술을 회피하거나 보호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더욱 주목해야 한다.

-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단계와 신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손상이 있을 경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영유아의 멍이나 탈구, 눈 주변의 멍 등)
-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을 경우(등, 두피,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 안쪽, 성기 주변 등)
- 영유아에게 손모양, 끈모양, 막대모양, 이빨자국, 끈 움켜쥐거나 도구 사용한 모양의 멍이 있을 경우
- 평소와 달리 영유아의 행동 및 정서상태가 무기력하거나 불안정해보일 경우 (손발톱 물어뜯기, 공격적인 행동, 퇴행행동, 두려워 함, 대화거부, 저항행동 등)
- 영유아가 가정이나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른 때문에 가기 싫다는 표현 또는 반응을 자주 또는 갑작스레 하는 경우

#04

**가이드라인
개발**

○ 체크리스트 내용

2. 영유아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나 흔적이 발견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이 관찰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해야 한다. 단, 영유아가 진술을 회피하거나 보호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더욱 주목해야 한다.

- 영유아가 성적행동(연령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성기를 보거나 만지려고 함, 또래에게 성적행동을 표현하거나 묘사를 함, 성병에 감염됨 등)을 하는 경우
- 최근 영유아가 지저분한 위생상태(약취, 손발톱의 심한 때, 세탁하지 않은 옷 착용, 옷에 이물질이 자주 묻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며, 자주 배고파하며,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 영유아와 보호자의 상호작용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경우(영유아가 보호자와 눈맞춤을 피함, 보호자가 영유아를 좀처럼 쳐다보거나 만지지 않음, 보호자가 영유아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 함)

#04

가이드라인
개발

○ 사용방법

- 본 체크리스트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체크가 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전화는 112
- 아동학대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경찰과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 112 신고전화로 아동의 정보와 행위자의 정보,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 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에 의해 보장된다.

#05

연구함의
및
제언

○ 합의 및 제언

-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 행위자 관련 위험요인(영유아 발달문제, 행위자 어릴적 학대경험,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스트레스, 경제적어려움, 알콜남용 등) 이 발견될 경우 영유아 및 가족을 접촉하는 전문가의 예방적 노력과 조기개입 및 일반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잠재집단 분석에서 학대유형별로 아동 및 행위자 위험요인(영유아 연령2~3세,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과 관련된 아동학대 위험가구는 주의해서 모니터링 하거나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가정 외 학대를 예측하는 요인은 행위자의 교육방법(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임. 가정 외 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이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임을 고려할 때,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훈육방법의 교육 및 재교육이 필요함.

#05

연구함의 및 제언

○ 합의 및 제언

- 예방적 측면에서 영유아 발달특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양육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조기발견의 측면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영유아 학대를 조기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부의 아동학대 상시발굴 체계 구축 시 영유아 학대 특성으로 밝혀진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알콜남용 등의 요인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THANK YOU



토론

- 최혜영**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박현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양진혁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류승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국장



제2차 어린이 안전 포럼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토론 1

최혜영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영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부모와 사회 모두가 담당해야 할 책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의 영유아는 가까운 부모로부터의 학대 그리고 기관에서의 학대 등으로 건강한 성장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기관에서의 학대 사례는 부모 학대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더라도 부모의 보호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받는 부적절한 대우인 만큼 사회적 파장은 크다.

본 고에서는 영유아 학대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학대행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합의된 인식을 위한 교육 필요

학대의 정의와 학대 유형별 사례들은 이미 법률과 교육용 자료를 통해서 제시되어 있음에도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양하며 혼란스럽다. 학대행위는 행위의 정도, 의도성과 빈도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판단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부모, 교사, 경찰, 법원 관계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은 일치하기 어렵다. 정서나 방임학대에 해당하는 기준에 이르면 인식에 대한 편차는 더욱 제각각일 수 있다. 이 점이 학대신고를 어렵게 만들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또한 학대판정에 대한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대신고의무자와 학대사례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합의된 기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2. 학대사례 판정 범주의 세분화 및 이에 따른 조치방안 이행의 강제성 필요

현재 학대사례판정 기준은 학대사례 또는 일반사례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사례에는 학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훈육사례가 포함되는 등 매우 다양한 범위의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 일단 신고사례가 일반사례로 분류되면 별다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사례 안에는 잠재적 학대사례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대사례 판정 기준을 학대사례, 학대관심사례, 일반사례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대사례에는 법적 조치가 따르고, 학대관심사례에는 교육이 따르며, 일반사례는 원하는 경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이행의 강제성을 갖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학대사례 조치사항이 가해자 처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학대관심사례 또는 일반사례에도 피해 의심 대상과 주변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교사에 의한 학대가 신고된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조치는 당연히 진행되겠으나, 해당학급의 나머지 영유아에 대한 회복조치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급 이상에서는 위클래스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별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학대관심사례의 경우도 가해 부모 또는 가해 교사에 대한 적절한 훈육지도 교육, 개인 감정조절 상담 등의 조치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조치 이행의 강제성도 가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향후 학대의 발생 또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진행될 수 있는 일부 조치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기관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사후조치의 강화 차원에서 기관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처벌은 학대 가해자에 가해져야 하는 것이고, 학대기관의 폐쇄 이행은 나머지 교사와 영유아에게는 또 다른 권리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학대에 노출되지 않은 영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과 교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기관과 원장을 동일시하기보다 관선원장 또는 신규교사를 파견하는 등 학부모와 원아들의 권리가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후에 기관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영유아가 경험할 이차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부모와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1) 가정과 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연구물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나 교사 모두에서 학대의 원인으로 가해자의 성격특성, 스트레스 유발 양육환경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으로 충동적이거나 감정조절이 취약한 양육자가 취약한 양육환경에 놓일 때 학대행동의 정황이 나타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부모 교육이나 교사양성과정의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면 다소 피상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체학대나 방임에 영향을 준 원인에 따라 부모의 감정, 분노조절 프로그램, 우울감 극복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사도우미 파견이나 병원 통원 시 차량지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또한 기관에 대한 지원은 보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영아의 기관 이용시간 제한(반대로 부모와의 시간 확장), 담당하는 학급크기 조정, 대집단 형태의 행사 축소, 밥먹기와 낮잠자기 등이 집중 되는 일상생활 관련 일과 시간에 보조교사 투입하는 등 제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우려점

부모의 양육가치나 양육관은 다양해야하며 이는 존중되어야한다. 자칫 획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이러한 부모교육 의무화를 강조하다보면 마치 올바른 자녀교육법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감을 가지고 양육에 임하는 것이며 자신만의 양육방법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편 부모교육 공여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고, 부모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면 이는 효과적이지 않다. 부모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은 지식획득 뿐 아니라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각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부모에게는 부모교육바우처 등을 제공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도 필요한데, 기존의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을 활용하여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확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

다. 우리의 현주소는 과도한 보육교육환경지원으로 인해 부모가 양육효능감을 증진할 시간과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이 부분은 제도로써 부모의 역할방임이 의도치 않게 조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모가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신장시켜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도 대리양육체제 못지않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다. 그럼에도 각 기관 간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실시, 아동학대 사례 신고 접수 시 상담과정을 제외하고는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학대사례 처리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훈육행동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반면 교육기관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기관에 대하여 방어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사례와 함께 우수한 사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사례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기관 간에 상호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학대사례 복기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화

학대사례의 발생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대 가해자와 상황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 마치 자살사태에 대한 복기작업과 마찬가지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를 가한 부모나 교사의 개인특성(성격, 분노조절, 충동성, 스트레스 대처 등)과 환경특성(양육환경, 직무환경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보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저장된 학대사례 뿐 아니라, 신고 접수 단계부터 일반사례 또는 학대관심사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신고단계에서는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상담원이 첫 번째 면담에서 기술적인 정보를 일관되게 기입할 수 있도록 서식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대자의 개인특성, 학대가 발생한 장소, 시간, 상황에 대한 상황특성에 대한 정보가 정리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학대사례 신고 시 학대판정까지는 피해의심자에 대한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며 처리과정에 대한 매뉴얼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기관에서 교사에 의한 학대를 의심할 경

우 처리 절차에 의해서 사례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부모와 기관 상호 간에 주지가 되어야하므로 부모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사고처리의 과정에 대하여 상호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책무와 기관의 책무에 대하여도 주지해야할 부분이다. 현재 기관에서의 학대 처리 매뉴얼은 가해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처리과정에서 학대 의심자의 역할, 부모나 제 3자에 의한 신고자의 역할도 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다.

아동학대는 합리적 사례처리에 비중을 두는 만큼 학대예방에 대한 비중도 함께 두어야 할 것이다. 예방 차원이란 자칫 모든 양육자를 잠재적 학대자(특히 취약계층)로 가정할 수 있는 모순도 존재하나, 아동의 권리 증진과 행복증진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 비중을 두고 정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2

안정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장학관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 * 한 명의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웃도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보살펴야 함.
- *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교육하고 돌보는 일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은 물론 지역 사회 등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임.

1 연구 결과에 관한 본 토론자의 주요 관심내용

- 부모와 교사라는 양육과 교육의 주된 주체의 인식을 토대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있어, 그 범위를 내 아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만이 아닌 남의 아이의 학대에 대한 인식도 함께 봄으로써 함께 키워야 한다는 인식의 필요성 모색
-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 & 아동 학대의 유형 간 개념의 명료화
 - (정의)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류한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분석에 따른 현실적 이행 방안 제언 필요
 - (학대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한 조기발견)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가정방문을 의무화함으로써
 - 학대의 조기발견 외에도 개인정보공개법 강화로 인해 영유아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어려워진 교육현장에서 영유아 및 학생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정방문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및 폐해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아동안전교육 충실 이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무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서 유아 및 학생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는 발달단계별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 잘못된 교육내용 및 방법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예방하고 부모 및 교사의 교육훈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교육효과 극대화

② 정책 제언 및 정책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 아동학대의 극단적 측면의 부각보다는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중요함에 공감하며, 현장에서의 다양한 예방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함이 요구됨(참고 1)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주기적인 자가 점검(자기 행동평가) 등을 통해 아동학대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 노력
 - 유치원 교직원 스스로 아동학대 민감성을 점검할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 개발*·보급(교육부, '16. 12. 14)
 - ※ ‘유아 체벌 금지’ 및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 ('16.5.29)*한 바 있으나,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교직원 스스로의 예방 노력 필요
 - * 「유아교육법」 제21조의 2(유아의 인권보장),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개정시행
-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교원 인·적성 강화를 위한 검사 및 연수 활성화 내용을 보육교사에게도 동시 적용하는 방안 등 누리과정을 공통 적용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유·초·중·고의 교사양성 및 신규 진입 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기관에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 개설하고, 교직과목 중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관련 과목을 2학점이상 개설

- 향후 현직 교원의 경력에 근거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관련 연수 강화 추진
- 장기적으로 유아기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누리과정 운영 방안 마련 및 지도 점검을 통해 하루일과 중 발생할 수 있는 생애초기 행복감 저해 요인 차단
 - * UN 2016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6)에 따르면 유아기 행복감은 이후 발달 및 사회적 관계 등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 * 이 시기의 행복감은 놀이, 또래간 교제활동,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을 할 때 가장 높음.

네이버블로그 홍보 사례)

청년기자 이상국*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야기 : 지역 민간단체가 바라본 아동학대 해결 방안**

아이들이 성장을 느끼기까지 그 시작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관심을 표현하는 일,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① 서울 성동구(마장로)의 좋은 가족만들기 상담센터(GD Family) : 지역에서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성동 드림스타트 센터의 협력기관으로 위기가정 아동심리 상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 가족들이 화합하고 가정 내에서 서로 이해와 존중의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있음. 특히 성동구 드림스타트 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람 작은 도서관도 함께 운영 (문형욱 대표, "학교, 민간단체, 공공기관 유기체처럼 연결되어야 효과 높다")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도 중요하지만, 부모 교육 활성화를 통해 가정의 사랑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민간 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연합하여 부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 실제로 GD Family는 성동 드림스타트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민간 복지 시설인 성수 종합 사회복지관과 교류하며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

**② 서울 성동구(성수동)의 성수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의 민간 복지시설로 복합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 (조재광 사례관리팀장, 1)이웃의 일에 관심 가져줄 수 있는 문화 만들기가 중요) 어른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집중해 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며 기꺼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며, 아동학대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 아동학대 문제는 마을에서도 관심 가져야 할 영역으로 조금 더 밝은 마을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이웃의 일을 함께 마음 아파하며 관심 가져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함. 이

웃을 돌아보고 챙기는 어른들이 있는 마을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아픔도 품을 수 있으며 그런 어른들이 실제로 행동하고 자녀들에게 인식시켜 준다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 아동학대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봄

2)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콘텐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 아동 학대를 받았던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서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이 담긴 시청각 콘텐츠가 나오면 많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아이들에게 존재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등의 시청각 콘텐츠 제작 강조

토론 3

박현선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영유아학대는 발견 자체가 어렵고, 그 결과 또한 치명적일 수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본 포럼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의 연구를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을 맡은 부분은 수사재판기록조사를 통해 영유아 학대 특성을 살펴본 형사정책연구원의 전영실 박사님의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 4년에 걸쳐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확정된 영유아학대사건 186건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수사재판기록이니만큼 일반적인 연구자들의 접근성이 희소한 자료이므로 연구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도 보다 심각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판기록사례를 대상으로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연구자의 논지와 주장,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맡은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의견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연구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고난 전체적인 인상은 전체 아동학대 양상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실제도 그렇다고 봐도 될는지 연구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수사재판기록에 의거한 분석이었던만큼 일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되고, 개입한 사례와는 어떻게 결과가 같고, 달랐는지, 발달단계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령기 아동과 다른 영유아학대 피해자나 가해자 특성으로 하이라이트 할 부분은 무엇인지, 동일한 영유아에서도 특히 언어적 의사표현이 가능한 연령대인 4

세 이후 아동들과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영아들의 경우에는 학대의 발견과 진단, 개입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와 셋째 의견은 연구자의 제안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영유아 학대의 경우 예방과 조기발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공적 시스템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학령기에 학교라는 공적시스템에서 학대가 발견되는 것과 같이 영유아기에 대부분의 영유아가 노출되는 최초의 사회적 시스템은 병원과 보육기관입니다. 특히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영아의 경우에서도 예방접종을 통해 의료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되며, 이러한 영유아의 검진과 예방접종은 국가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공단의 예방접종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면 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영유아를 발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가 정보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필수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아동들에 대한 추적 및 사례관리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방임이나 학대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는 모든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많은 학대 사례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고, 주장해왔지만 사회적인 공감과 호응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인 사건을 접하고야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조사 결과 더 많은 심각한 사례들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존 제도에서 접근 가능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보다 면밀히 감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학대의 경우 보험공단의 예방접종 기록 등과 같은 제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추적과 관리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인력간의 협력체계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간을 중심으로 논의하셨는데 저는 의료인력과의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영유아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민감성 교육 강화와 신고의무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신고의무자들의 비율을 보면 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신고비율이 높은 반면 영유아 학대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의 신고는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을 영유아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학대의 신고의무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의료인들의 전문업무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학대 가능성 예를 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영아의 멍이나, 화상, 타박상, 성기 찰과상, 심각한 영양실조와 같은 이상 증후는 분명한 아동학대의 고위험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다른 질환을 이유로 내원한 환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개인병의원의 의료진의 경우 업무 부담의 과중, 신고제도에 대한 무지나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실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신고의무자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은 그 신고비율을 높이는 어렵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그들의 전문적 소견과 일상적인 의료활동에 신고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의무기록에 남기면 해당 기록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아동보호를 위한 데이터 공유와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자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진의 보호 윤리 등도 중요하지만 그 어떠한 개인의 권리도 아동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인식함으로써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있는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4

김은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님의 원고 잘 받아보았습니다. 영아(0세~만2세) 유아(3세~만6세)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포럼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동복지 현장과 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실천가로서 일해 오면서, 한국사회는 아동들의 복지, 보호, 권리가 많이 미흡함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사실, 우리사회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해오면서, 가장 뒤 늦게 개선 필요성 갖게 된 분야가 아동영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을 보면, 영유아의 경우 90% 이상의 주 양육자의 보살핌과, 애정, 사랑, 관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만큼 부모, 주 양육자의 자극, 영양공급 등 양육방법이 영유아의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만 6세까지 아동의 뇌 발달이 90% 이상 형성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아동일지라도 조기 발견 시 많은 부분 손상을 수술 및 치료로 조기개입하여 더 이상 나빠짐을 예방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경기도 광주시에 한사랑 장애 영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65명의 영유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두증, 다운증후군, 뇌 병변 편마비등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들과,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장애 영유아들이 입소되어 생활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시설 개소시에는 전체 아동 중 70% 이상이 누워서 생활하고 있었던 영유아들이 최근에는 70% 이상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동으로 바뀐 점입니다. 질환을 판단하여 조기 개입한 결과이며, 걸어 다니는 영유아가 나타나면서 이를 학습하여 영유아들이 걸어다니게 되면서 이들 발달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인근의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점도 놀랍습니다.

인지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영유아의 경우, 대 근육, 소 근육 발달에 기여하는 물리 치료와 인지치료를 병행해주고 지체장애가 있을 경우, 조기수술로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치료시, 영유아의 인생에 큰 전환점들을 겪으면서, 이들을 인격체로서 권리를 보장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유아들이 이들의 삶의 큰 변화를 갖게 됨에 실천가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토론자는 여기서, 한국사회가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 결손, 또는 해체시 가장 강한 희생 또는 피해자가 아동들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동들을 보호,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한국의 아동의 수는 2016년 현재 940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고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아동복지적 태생의 관련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컨트롤타워의 유기적, 적극적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영유아지원법, 아동복지법 등 기본법을 어떻게 제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점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영.유아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는 먼저, 발골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갖고자 합니다. 영유아는 90% 이상 주 양육자의 양육, 보호에 의해 이들이 성장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출생 후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스크리닝이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영유아 어린이집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방 접종이 제때에 안 되고 있는 영유아는 국가가 개입하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주양육자, 부모에 90% 이상 의존하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대상 아동연령에 따라, 아동 양육교육, 부모교육 등이 접근성이 좋은 모든 곳에서 산모를 포함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20, 30대 출산한 많은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 심리센터를 방문하여 이들의 주 고객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최근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산모교육, 영유아 발달 단계별, 양육방법을 포함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혼모 지원센터를 방문 했을 때에도, 미혼모들이 산후 우울증으로 영유아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있어서 한방에 2명의 산모가 생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가족제가 핵가족화 하면서, 또는 성장기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성장한 성인들이 부모가 되면서 분노조절이 안 되는 성인, 가정 폭력하에서 성장한 성인,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관련기관 및 국가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심리치료에 개입하고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되는 과정을 알게하고 지역기관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가족 기능 강화에 개입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역사회내의 지적장애자부모하의 영유아들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들 가정은 대부분 물리적 방임 하에 놓인 영유아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제도를 활용해보도 좋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최근 가정위탁부모의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정부가 지급하는 위탁비로는 영유아동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용이 현실화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모교육 보다는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대안제도 안에서 양육하도록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아동이 발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장애 영유아가 학대 행위가 진행될시, 일반 양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들은 입소되지 않습니다. 장애영아원으로 입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위한 특별사례관리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장애영아들은 사실 아동복지기관, 장애기관과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치료적 개입이 가능한 가정위탁부모의 양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고의 주제가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입니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모, 주양육자에 절대적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의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치료 포함한 분노조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지원과,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최근 20대 30대 부모들 재혼 동거가족의 경우 엽기적인 영유아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제대로된 부모가 되도록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영유아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스크리닝을 하면

서, 보건소, 주민센터, 영유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영유아의 학대예방은 성장기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가진 부모가 할지라도 선 심리적 치료후, 좋은 부부되기 교육, 더불어 연령과 아동발달에 따른 좋은 양육방법이 포함된 부모교육이 지역사회, 국가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수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최근 몇 년동안 사회문제가 되어온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400여명의 넘는 영아들이 양육시설로 입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도권 안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요보호아동들이 5천여명이 나타나고 있고 베이비 박스로 인해 입소되는 영아들은 엄연한 영아 아동유기입니다.

토론 5

양진혁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 영유아의 특수성 우선 고려

- (학대 발견 어려움) 영유아의 경우, 언어를 통한 의사전달 자체가 어려워 학대여부 파악이 가장 어려운 대상
 - 어느 정도 언어능력이 발달한 경우에도, 심리상태나 타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의사전달이 왜곡될 가능성
 - 따라서 정부·지자체 및 영유아 관련 기관, 신고의무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발견하려는 노력 필요
- (지원의 중요성) 영유아 학대의 경우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초기에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므로 복합적인 지원 필요
 - 언어·심리치료와 더불어 보호자 및 주변 사람과의 관계 회복 등

□ 영유아 학대 예방 관련 정책 등

① 신고·발견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장기결석·건강검진 미실시·양육수당 미신청 등 아동의 위기상태와 관련성이 있는 빅데이터 활용(간접적 의견청취)
 - 위기가동을 예측하여 필요 시 복지서비스 등 조기지원 및 아동학대 신고·보호 조치하는 시스템('17년 하반기 시범운영 예정)
- (신고의무자) 학대피해를 스스로 알리기 어려운 아동 특성 고려 시, 교사·의사·사회복지사 등 인지가 용이한 직군에 신고의무 부여
 - 신고교육 강화 및 의무불이행 시 철저한 과태료 부과 조치

- 교내·외 기관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 학대 조기발견 교육 실시
-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입양기관 종사자 등)

② 보호·지원 확대

- (사후관리)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후 지속적으로 아보전 상담원이 전화상담·가정방문을 통해 양육환경 점검 및 아동의견 청취
 - 특히, 시설퇴소 아동 등의 경우 귀가 후 6개월 내에 공무원이 가정방문 등을 실시토록 지침 개정
- (종합 지원)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를 체계화하여, 학대아동이 속한 가구가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재학대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가족기능 회복이 가능한 지원방안으로 연계하되, 재학대 발생 시 아보전과 신속 공유토록 조치
- (맞춤형 지원) 학대 아동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중
 - * 법률상담,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을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진행 중

③ 관계기관 간 공유·연계 강화

- (단기) 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취학관리 전담기구-위기아동발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 확대
 - * 교육청 보유 장기결석,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정보를 복지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 진행 중
- (장기) 복지부·교육부·여가부·민간 등이 각각 보유한 요보호 위기아동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연계하는 방안 필요
 - * 학대 피해아동을 포함, 요보호아동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중

토론 6

류승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국장

- 지난 해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내에서의 영유아 안전과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시행(2015.9.28)된 지 1년 3개월이 경과하였음.
 - 사건이 이슈화될 당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보육교사의 학대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는데, 이후 해당 시설은 폐원되었고, 보육교사는 징역 2년형, 원장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¹⁾
 -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보육교직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

- 같은 해 12월, 부모에 의한 학대와 굶주림에서 맨발로 탈출한 11세 여아 사건을 계기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이슈화 되면서, 전국 초등학교의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 조사가 이루어졌음.
 -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 실시 이후, 입에 담기에도 무서운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줄이 밝혀지고 있음.
 - 얼마 전 11세 여아 학대사건의 가해자인 부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구형되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법을 소급적용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9월 이후 어린이집의 CCTV는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전예방보다 사고발생 이후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1)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용도로서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음.

-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친밀한 관계자에 의해 지속적이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가정 내 아동학대는 주변의 의심신고를 통한 경찰 등의 적극적인 수사에 의하지 않고는 구체 사실 확인이나 제어가 어려울 것임.
- 스스로 겪은 일이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서 표현하기 힘든 영유아에게는,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고 이후에라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보육시설에 대해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다행이라 여겨짐.
- 발표자가 제시한 체크리스트 역시, 사전예방보다는 발견 이후에 조기개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며 적절한 훈육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예방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조기개입 역시 사후처리에 해당되며, 사전예방적 성격의 사회적 기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전 예방적 사회기조 마련 필요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발표자께서 제시한 학대 예방 가이드라인이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 대상 홍보로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 된 이후 모니터링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조기개입이 가능할 것임.
- 구체 방법으로, 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은 어린이집 입학 시 오리엔테이션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실행이 가능할 것임.
- 보육교직원(대리양육자)에 대한 교육은 현재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령별 발달행동 및 발달심리, 영유아의 이해, 분노 조절 등을 포괄하는 사례 중심의 교육커리큘럼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보육교사 자격취득 과정 내 학부 전공과목 및 양성과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 자격관리시스템 연계 검토)
- ※ 생애주기별 안전, 보안에 대한 교육도 필요

□ 양육자의 보육환경 개선 방안

- 아동학대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양육자의 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발표자는 어린이집 등의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요인으로 행위자의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을 제시하였으나, 우리가 그 간 뉴스를 통해 보고들은 가정 외 학대의 대부분이 결국은 양육자의 불편한 감정을 양육대상에게 정서적·신체적 폭력의 형태로 발산하는 경우였으며, 이는 스트레스 조절과 적절한 해소 방안 제시로 예방 내지 개선이 가능할 것임.(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도 고려)
- 벨기에 브뤼셀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 시 반드시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 및 부모는 물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벨기에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총론적으로(예방적 차원 및 대책)

- 첫째, 아동학대는 인식결여, 홍보부족, 특히 결손조손 가정의 지원부족과 부모교육 활성화 부재
 - 부모, 보호자의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 ; 어디까지 훈육이며, 무엇이 학대인가? 적절한 사회적 접근과 정책 수립 필요
- 둘째, 보편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80%, 그 중 편부모가정이 50%를 차지하고 있음.
 - 생계가 우선인 조손 가정 등의 방임과 방치에 대해 대한 국가와 사회적 개입 필요
- 셋째, 부모교육의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음.
 - 잘못된 양육태도와 지식,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을 시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영유아가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양육스타일,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일어남
 - 따라서 「생애주기별」 인권, 아동학대, 훈육에 대한 교육과 상호교감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교육과 생활의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 넷째, 처벌기준 강화 필요
 - 최근 영유아 보호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적발 시 해당자 형사처벌과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연대배상책임 물음.(최근 법원 판례)

- 예시로써, 2016년도 미 워싱턴 D.C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특히 신호위반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하며, 법원출두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극감되었음.
- 다섯째, 보육교직원에게 적정한 보육인원과 기준 마련, 처우개선 등도 고려할 때임.